종합감사

감 사 보 고 서(안)

- 울산광역시교육청 종합감사 -

2025. 12.

교 육 부

감사결과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익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감사결과 실명이 공개된 모든 기관이 비리에 연관되어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1

Ⅱ. 감사 대상 기관 현황 ····· 2

Ⅲ. 감사결과(안) ····· 4

1. 감사결과 총괄 ····· 4

2. 적극행정 면책 처리 현황 ····· 5

3. 처분 요구 사항 ····· 6

(1)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 취지에 맞지 않게 보조금 지급[기관경고·통보] ····· 6

(2) 사립유치원 직원 배치기준 미비(기관경고·통보) ····· 12

(3) 사립유치원 휴원 및 시설 관리 지도·감독 부적정[기관경고·통보] ····· 16

(4) 사립유치원 교원의 겸직 허가 부적정 및 공무외 영리업무 종사(징계·통보) ····· 23

(5) 학원 위치 변경 후 배상책임보험 가입 관리 부적정[주의·통보) ····· 38

(6) 교원 수당 지급 부적정(통보) ····· 44

(7) 지방공무원 등 학습휴가 및 가족돌봄휴가 사용 부적정(기관주의·통보) ····· 51

(8)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 명부 오작성 및 부당 승진[기관경고·징계·경고·주의] ····· 57

(9) 교장공모제 감점 처리 기준 미준수 등 운영 부적정[기관경고·주의·통보] ····· 72

(10) ○◩ 시설공사 계약 및 법정경비 정산 업무 부적정[징계·경고·주의·시정·통보] ····· 84

(11) 시설공사 법정경비 정산 부적정[주의·시정] ····· 98

(12) 기술사용료 집행 부적정[시정·통보] ····· 103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감사주기를 고려할 때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였다. 이에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자 2024년 행정감사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에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교직원 인사 및 복무 관리, 예산 및 회계 관리, 입시 및 학사 관리, 시설물 안전 및 재산 관리, 민원·비위 제보에 따른 확인 필요사항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2021. 1월 ~ 2024. 6월 감사일까지 수행한 업무를 점검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주요 언론 보도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고, 2024. 6. 10.부터 6. 21.까지 10일간 감사인원 14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024. 6. 21. 부교육감 등 주요 보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감사 마감 회의를 하고, 2025. 1. 14. 서면으로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교육부에서는 감사 마감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5. 5. 19.(1차), 2025. 5. 21.(2차) 감사처분심의회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 대상 기관 현황[1]

1. 주요 연혁

울산광역시교육청은 1964. 1. 1. 울산시·울산군교육청 분리 후 1973. 1. 26. 울산시교육청으로 통합되었고 1997. 7. 15. 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 승격하였다. 1977년에 초대 교육위원회 개원(8. 20.) 및 초대 교육감이 취임(8. 22.)하였으며, 2023. 4. 6. 10대 교육감이 취임하였다.

2. 기구 및 정원 현황

울산광역시교육청은 본청 2국 2관 2담당관 1단 13과 66팀의 조직체계이고 소속기관으로 2개 교육지원청, 11개 직속기관이 있으며, 정원은 교원 10,746명을 포함하여 17,045명이다.

[표 1]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원 현황

(단위: 명)

계	정무직	교원	일반직	전문경력관	연구직	별정직	특정직(교육전문직원)	사립학교 행정직원	교육공무직	특별운영직군
17,045	1	10,746	1,686	4	3	2	226	93	3,612	672

3. 예산 현황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세입·세출 예산은 [표 2]와 같이 2023년 2,394,519백만원에서 2024년 2,231,929백만원으로 162,590백만원(△6.8%) 감소하였다.

[표 2] 울산광역시교육청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증감	비고
세입	2,394,519	2,231,929	△162,590	
세출	2,394,519	2,231,929	△162,590	

1)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기관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대상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조사 등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이 아님

4. 학교·학생·교원 현황

[표 3]과 같이 울산광역시교육청이 관할하는 학교는 유·초·중·고 등 총 421교이고, 학생은 142,176명이며, 교원은 10,746명이다.

[표 3]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현황

(단위: 교, 명)

구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유	91	83	174	766	13,489	378	680	1,058
초	121	0	121	3,057	65,097	4,114	0	4,114
중	62	2	64	1,300	32,418	2,397	88	2,485
고	45	12	57	1,326	30,341	2,297	520	2,817
특수	2	2	4	151	775	166	88	254
각종학교	1	0	1	6	56	18	0	18
계	322	99	421	6,606	142,176	9,370	1,376	10,746

Ⅲ. 감사결과(안)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감사결과 총괄

(단위: 건, 명, 원)

구분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별도조치
	중징계	경징계	경고	주의	계			
울산광역시 교육청	-	6명 (3건)	7명 (2건)	24명 (5건)	28명 (6건)	· 기관경고 5건 · 기관주의 1건 · 통보 12건 · 통보(인사자료) 1건 **【합계 19건】**	· 시정(회수) 3건, 56,000,270원 **【합계 3건】**	· 통보 7건 · 고발 1건 **【합계 8건】**

※ ( )안은 신분상 조치 대상자에 대한 지적 건수 합계임

※ 처분 요구 인원 산정 시 신분상 조치가 경합된 경우 상위 조치로 함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가) 사립유치원 교원의 겸직 허가 부적정 및 공무외 영리업무 종사

- 「사립학교법」 등에 근거하여 교원의 영리업무 종사가 금지되나, 원장이 교사의 영리업무(교습소 운영) 겸직 허가, 원장·교사가 학원·교습소 운영

(나) 장학관·연구관 후보자 명부 오작성 및 부당 승진

- 「교육공무원법」 등에 근거하여 적격자 모두를 대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나, 승진포기원을 징구하여 적격자 153명 누락, 오작성 명부로 부당 승진 등

(다) 교장공모제 감점 처리 기준 미준수 등 운영 부적정

- 교육부 지침(「교장공모제 업무처리지침」) 상 기재 금지 사항의 감점 미조치, 교육청 교장공모제 자체 관리 방안 미준수(심사 위원 무작위 선정 미적용, 일부 심사과정만 녹취) 등

(라) 시설공사 계약·법정경비 정산 업무 부적정

-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전문공사업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미등록 업체와 계약 체결, 법정경비 정산시 증빙서류 확인 미흡으로 공사비 과다 지급 (14건, 49,988천원)

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관련 규정 정비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공무외 영리업무 겸직 및 이를 허가한 관련자와 교육공무원의 부당 승진을 초래한 관련자에게 징계(경징계 이상) 조치하고, 과다 지급된 공사비는 회수(합계 49,988천원) 하도록 하는 등 총 12건의 처분을 요구하였다.

2. 적극행정 면책 처리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처분 요구 사항 : 12건[붙임 참조]

붙임 **처분 요구 사항**

교 육 부

기관경고·통보

제 목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 취지에 맞지 않게 보조금 지급**

소 관 기 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조 치 기 관 울산광역시교육청

내 용

1. 업무개요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울산교육청”이라 한다) ○과는 「울산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유아교육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공·사립유치원 교원 간 임금 격차의 단계적 완화를 목적으로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기본급 보조금과 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부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계획」[2]에 따르면 그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에서 사립유치원 교원이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기본급 보조 지원을 배제한다고 되어 있고,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동 계획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시행 후 그 실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마련된「2024. 울산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계획」에 따르면 기본급 보조 지원 금액은 사립유치원 교원 1인당 월 85만원[3]이고, 지원 제외 대상자로는 동일 호봉 국·공립학교 교원의 평균 보수 월액 수준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교원, 행정업무를 지원하면서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보조하는 교원, 주 15시간 미만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는 교원 등으로 정하고, 유치원으로 하여금 기본급 보조 지원 조건(자격)을 철저히 확인하여 오류·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에 주의를 요청하면서 연중 전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지급대상자 적격 여부 및 인건비 지원에 따른 기존 보수 감액 등 부적정 사례 발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은「○□ 기관정기감사 감사보고서(2025.3.)」에서 ‘○□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계획’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교사가 국·공립유치원 교사의 보수 수준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받거나 겸직 중인 자 등의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ㄱ 관내 사립유치원 교사 중 국·공립유치원 교사의 보수 수준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겸직 중인 자에게도 보조 지원하는 등 총 3,180만원을 부당하게 과다 지급하였다며 사립유치원을 지도·감독하는 ○□에 해당 사례를 통보하고 자체적으로 처리한 후 결과를 회신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은 2025. 5월 현재 사립유치원 교사 중 국·공립유치원 교사의 보수 수준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받거나, 자체 계획에서 지원 배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타 기관에 겸직 중인 자 등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점검 및 환수 등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

2) 2013년부터 매년「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제4조(보통교부금의 교부통지)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통지
3) 2021년 월71만원, 2022년 월74만원, 2023년 월77만원

따라서 울산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계획」취지에 맞게 지원 제외 대상자가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처리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울산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교원 대상 기본급 보조 지원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24년 3월 기준 보조금을 신청한 교원 개개인의 봉급월액과 [표 1]의 기본급 보조 월 정액 지급 단가(최소60만원～최대85만원)를 합한 보수액이 동일 호봉 국·공립교원의 평균 보수 월액보다 높아져 기본급 보조 지원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교원이 [표 2]와 같이 총 83명으로 확인되었고,

[표 1] 기본급 보조 월 정액 지급 단가 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단가	기본급 보조(담임·장기근속수당 제외)			담임수당	장기근속수당	계
	교직수당	인건비 보조	소계			
2021년	250	300	**550**	130	30	**710**
2022년	250	330	**580**	130	30	**740**
2023년	250	350	**600**	130	40	**770**
2024년	250	350	**600**	200	50	**850**
대상	전 교원	전 교원		담임	5년 이상	

※ 담임수당은 학급담임교사에 한해 지급, 장기근속수당은 5년 이상 재직자에 한해 지급

이를 감사기간에 속하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확대하여 확인한 결과, 지원된 보조금과 보수를 합한 금액이 국·공립교원의 평균 보수를 초과하여 지원 제외대상자로 확인되는 교원이 총 160명(연도별 누계)으로 나타났으며, 2024년 연말까지 계속 지원할 경우 집행되는 예산 추정액은 [표 2]와 같다.

[표 2] 2021~2024 지원 제외 대상자(국·공립교원 보수 초과자) 대상 기본급 보조금 지원 예산

(단위: 명, 천원)

연도	초과자	초과대상자 월 기본급 보조 금액(a)						초과대상자 연 기본급 보조 금액(a×12개월)					
		담임 (해당자)	장기근속 (해당자)	기본급 보조			계	담임	장기근속	기본급 보조			계
				교직수당	인건비 보조	소계				교직수당	인건비 보조	소계	
2021	32	2,340 (18)	540 (18)	8,000	9,600	17,600	20,480	28,080	6,480	96,000	115,200	211,200	245,760
2022	21	1,300 (10)	300 (10)	5,250	6,930	12,180	13,780	15,600	3,600	63,000	83,160	146,160	165,360
2023	24	1,690 (13)	480 (12)	6,000	8,400	14,400	16,570	20,280	5,760	72,000	100,800	172,800	198,840
2024	83	14,000 (70)	750 (15)	20,750	29,050	49,800	64,550	168,000	9,000	249,000	348,600	597,600	774,600
합계	160	19,330	2,070	40,000	53,980	93,980	115,380	231,960	24,840	480,000	647,760	1,127,760	1,384,560

【작성】 울산광역시교육청 ○과

한편, 관내 ○△[4]에 방과후 과정 담당교사[5]로 20xx.xx.xx.부터 임용된 AA이 유치원 인근에 본인이 설립한(20xx.xx.xx.) ○▷[6]에서 ○△ 원아들을 대상으로 A 과외 교습을 실시하고 있음[7]에도 유치원에서 AA을 [표 3]과 같이 기본급 보조 지원 대상자로 보고하여 교육청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확인되었는데, 울산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계획에는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미준수자에 대한 기본급 보조 제한 규정은 없었다.

[표 3] ○△ 방과후 과정 담당교사 기본급 보조 지급 현황(2024.5.기준)

(단위: 천 원)

연도	유치원명	직명	이름	담임수당	장기근속수당	기본급 보조		지원총액	비고
						교직수당	인건비 보조		
2024	○△	방과후 과정 담당교사	AA	-	-	750	1,050	1,800	3~5월(3개월)

4) (○△) 울산광역시 ㄴ 소재

5)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 유치원에서 근무하면서, 주 15시간 이상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는 정교사

6) (○▷) 울산광역시 ㄴ 일부 소재

7) 관련 처분은 안건 4번(사립유치원 교원의 겸직 허가 부적정 및 공무외 영리업무 종사)에서 심의·처분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울산교육청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수용하면서, 공·사립유치원 교원 간 임금 격차의 단계적 완화를 위한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계획」취지에 맞게 향후 기본급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사립유치원 교원의 보수와 기본급 보조금을 합한 금액이 동일 호봉 국·공립 교원의 평균 보수 월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 차액을 지원하고, 2025년 지원계획 수립 시에는 영리 업무 종사자 및 겸직자는 지원 제외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급 보조 지원 관련 미비점을 개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하였다.

② 검토결과

울산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 계획」취지에 맞지 않게 기본급 보조금을 월 정액으로 지급하고 지급 제외대상자를 고려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점은 지적이 필요하나, 앞으로는 기본급 보조금 지원 취지에 맞게 보조금을 합한 금액이 국·공립 교원의 평균 보수 월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 차액을 지급하여 개선할 것이라고 답한 점, 영리 업무 종사 및 겸직자 등 보조금 지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추가 제외 대상으로 정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답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교육감**은

①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 취지에 맞지 않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관리·감독 등을 소홀히 한 담당부서(○과)에 경고 조치하고, **(기관경고)**

②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급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 점검하여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시고, 보조금 지원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계획 수립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교 육 부

기관경고·통보

제 목 **사립유치원 직원 배치기준 미비**

소 관 기 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조 치 기 관 울산광역시교육청

내 용

1. 업무개요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울산교육청”이라 한다) ○과는 「울산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유아교육 운영 및 진흥, 사립유치원 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유아교육법」제2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유치원에는 교원 외에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고, 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르면 유치원에는 원장·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 학급을 담당하게 하고, 유치원에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1명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울산교육청은 공·사립유치원 교원과 직원에 대해 배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울산교육청은 [표 1] 및 [표 2]와 같이 공·사립유치원 교원 및 공립유치원 직원에 대해서는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있었으나, 미상일로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사립유치원 직원에 대해서는 배치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표 1] 울산교육청 공 · 사립유치원 교원 정원 배치기준

◆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2학급 이하의 유치원은 원감을 두지 않을 수 있음(「유아교육법」 제20조)

◆ 학급마다* 교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 학급을 담당하게 하며 2학급 이하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 및 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음(「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 2024년 학급당 모집정원: (만3세) 14명, (만4세) 19명, (만5세) 22명, (혼합) 18명

【자료】「사립유치원 인사업무 길라잡이(2021년, ○과)」, "2024년 공립유치원 학급당 정원 조정 계획"(□과-5582, 2023. 10. 6.), "사립유치원 학급당 편성 정원 준수 알림"(○과-18614, 2023. 12. 4.)

[표 2] 울산교육청 공립유치원 직원 정원 배치기준

(단위: 명)

연도	기준학급	지방공무원							행정 실무사 (교육공무직)	비고
		교육행정					시설관리	계		
		5급	6급	7급	8(9)급	소계				
2021~2022	유치원당			1	1	2	1	3	-	
2023~	11학급 이하			1	1	2	1	3	-	
	12학급 이상		1		1	2	1	3	-	

그 결과 [별표] "2024년 사립유치원 직원 현황(현원 기준)"과 같이 설치 학급수가 동일함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직원 현원을 달리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울산교육청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수용하면서, ○과가 2020. 1. 1.자로 신설되어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유아교육 업무를 통합·인수하는 과정에서 인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사안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울산교육청 사립유치원 설립·운영 인가 기준'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 직원 배치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교육감**은

① 사립유치원 직원 배치 기준 마련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 부서(○과)에 경고 조치하고, **(기관경고)**

② 관련 법령에 따라 사립유치원별 직원 배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표]

2024년 사립유치원 직원 현황(현원 기준)

(단위: 명)

※ 생략

교 육 부

기관경고·통보

제 목 **사립유치원 휴원 및 시설 관리 지도·감독 부적정**

소 관 기 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조 치 기 관 울산광역시교육청

내 용

1. 업무개요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울산교육청”이라 한다) ○과는 「울산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자체 규정 등에 따라 유치원 휴원 처분 등 업무를 담당하고, 「유아교육법」제18조에 따라 관내 사립유치원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유아교육법」제31조 제3항에 따르면 관할청은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원에 휴원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울산교육청 사립유치원 설립·운영 인가 기준(교육청 지침, 2021.8.20.)」에 따르면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제출한 휴원 신청서 등에 대한 서류검토 및 현장 조사 후 [표 1]의 기준에 따라 휴원을 인가하도록 되어 있다.

[표 1] 사립유치원 휴원 인가 기준

- 휴원 사유 타당성 : 재개발 등으로 인한 유아 확보 및 재정적 어려움 등
- 휴원 절차의 준수 : 운영위원회 자문, 학부모 동의
- 재원유아 전원조치 적합성 및 **휴원 시설 관리**
  ① 인근 유치원 · 어린이집으로의 원아 전원조치 학부모와 합의
  ② **문서, 비품, 교실관리 방안 적합성**
  ③ 건물, 토지 등 담보 및 매매 금지
- **향후 정상 운영 계획의 적합성**

또한, 「유아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르면 휴원한 유치원은 휴원기간 중 단순한 관리업무 외에 유치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울산교육청의 [별표 1] “사립유치원 인가 관련 질의”와 같이 관내 사립유치원인 ○▽의 휴원 연장 인가를 위해 “기존(유치원) 건물의 경우 그 기간(휴원 기간)동안 지속적인 노후 방지 및 관리를 위하여 비영리 시설로 활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2017. 3. 8. 질의에 대해 [별표 2] “사립유치원 인가 관련 질의 회신”과 같이 “「유아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유치원이 휴원하더라도 교육연구시설로서의 용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시설로 활용하는 것까지 관리업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어렵다”고 2017. 3. 28. 회신하였다.

따라서 울산교육청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립유치원 휴원 인가 시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해 휴원 시설 관리 및 향후 정상 운영 계획의 적합성 등 휴원 인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충분히 검토·확인 후 인가하여야 했고, 휴원 기간 중 휴원한 유치원이 단순한 관리업무 외에 유치원의 모든 기능을 정지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기간동안 2021년부터 2024년 감사일 현재까지 사립유치원 휴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울산교육청은 [별표 3] “사립유치원 휴원 현황”과 같이 관내 사립유치원이 제출한 휴원 신청서에 대해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1년 단위로 12개 유치원에 대해 휴원을 인가하였는데, 이 중 장기 휴원 중인 유치원의 휴원 인가 과정 및 관리 실태를 확인해보니 ○▽의 휴원 사례에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은 [그림 1]과 같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휴원 기간 시설 관리계획서’ 및 ‘향후 정상운영 추진계획서’에 매년 동일하게 “주기적 점검 및 관리” 등의 간략한 내용만을 기재하여 휴원 인가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림 1] ○▽ 휴원 신청 제출 서류(일부)

※ 생략

울산교육청 ○과는 ○▽이 신청한 휴원 인가에 대해 [표 2]와 같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위반하여 유치원 시설 1층을 ◭로, 2층 2개 교실을 비정기적으로 수업 공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2] ○▽ 휴원 관련 현장 조사 현황

연번	현장 조사일	조사 내용
1	2022.2.23.	-
2	2023.2.27.	-
3	2024.2.23.	-

※ (출처) ’22~’24년 ○▽ 현장 조사 출장복명서 내 ‘확인사항’에서 발췌

그럼에도, 울산교육청은 [표 3]과 같이 2022. 3. 1.부터 2025. 2. 28.까지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의 휴원을 인가하였고, 2022. 2. 23. 현장 조사에서는 교육부 질의 회신(2017. 3. 28.) 취지와 달리 “재개원 시 원상회복을 전제로 ○▽의 ◔ 사용을 인정”하였다.

[표 3] ○▽ 휴원 인가 현황

소재지	설립자	휴원 사유	인가 정원	휴원 신청 (○▽)	현장 조사 (교육청)	휴원 인가 (교육청)	휴원 인가 기간
ㄴ	-	-	-	-	2022.2.23.	-	-
			-	-	2023.2.27.	-	-
			-	-	2024.2.23.	-	-

또한, 감사 기간인 2024. 6. 14. 휴원 중인 ○▽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은 [그림 2]와 같이 유치원 시설 1층을 ◭로 운영하면서 영리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관계자 면담을 통해 2층 일부 교실은 수업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2] ○▽ 1층 관리 현황

※ 생략

-

다만, 울산교육청은 2022. 2. 23. 현장 조사에서 ○▽에 “유치원 시설 내에서 영리활동은 불가함”을 안내하였고, 2024. 2. 23. 현장 조사에서는 “1층 ◔을 유치원 시설에서 제외하고 2층 교실에서 수업을 제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울산교육청은 2024. 4월 ○▽에 대한 현장 점검을 3차례(4.17., 4.23., 4.26.) 실시하였으며, 감사 기간 중인 2024. 6. 17. ○▽이 ◭로 운영 중인 1층을 유치원 시설에서 제외하고 학급 수와 정원을 기존 0학급 000명에서 0학급 00명으로 변경 인가하였고, 2층 교실에서 수업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울산교육청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수용하면서, 향후 「울산교육청 사립유치원 설립·운영 인가 기준」을 개정하는 등 유치원 휴·폐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표준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울산교육청은 감사 기간 이후 휴원 중인 12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2024. 7. 5.)하여 현장 점검 후 2개 유치원[8]의 폐원을 인가하였고, 향후 연 2회 점검을 통해 휴원 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와 함께, 현장 조사에서 ○▽ 설립자에게 재개원 시 유치원 1층 시설의 원상복귀 및 영리활동이 불가함을 안내한 점, ○▽이 위상이 있어 폐원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기 어려웠던 점, 2020년 조직개편으로 인해 당초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던 유치원 인허가 업무가 시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휴원 유치원에 대한 교육부 회신 내용에 대한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못했던 점, 교육부 감사 기간 중 ○▽ 1층을 유치원 시설에서 제외하고 학급 수와 정원 변경 인가를 완료한 점 등을 처분 시 감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8) ○◁, ○◇

② 검토결과

○▽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위반하여 유치원 시설을 영리활동이 가능한 ◭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있음에도 교육청이 해당 시설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교육부 질의 회신(2017. 3. 28.) 취지와 달리 재개원 시 원상회복을 전제로 ○▽ 유치원 시설을 ◭로 사용을 인정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담당자가 교육청 조직개편으로 인해 교육부 질의 회신(2017. 3. 28.)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아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고 답한 점, 해당 유치원이 장기간 휴원을 지속하여 휴원 인가가 이전부터 형식적으로 행해져 온 점, 최근 업무 담당자가 현장 조사에서 ○▽ 설립자에게 재개원 시 유치원 1층 시설의 원상 복귀 및 영리활동 불가를 안내한 점, 감사 기간 중 울산교육청이 ○▽ 1층을 유치원 시설에서 제외하고 학급 수와 정원을 변경 인가하였고 2층 교실에서 수업을 제한하도록 한 점, 감사 직후 울산교육청이 장기 휴원 유치원을 전수 점검하고 2개 유치원을 폐원 조치한 점 등은 처분 시 감안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은

①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휴원 인가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 부서(○과)에 경고 조치하고, **(기관경고)**

②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휴원 유치원에 대한 실태 점검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의 유치원 시설 변경 인가 사항을 ○♡에 통보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표 1]

사립유치원 인가 관련 질의

※ 생략

[별표 2]

사립유치원 인가 관련 질의 회신

※ 생략

[별표 3]

사립유치원 휴원 현황

※ 생략

교 육 부

징계·통보

제 목 **사립유치원 교원의 겸직 허가 부적정 및 공무외 영리업무 종사**

소 관 기 관 ○△, ○♤

조 치 기 관 울산광역시교육청

내 용

1. 업무개요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울산교육청”이라 한다)은 「유아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관내 사립유치원을 지도·감독하며, 유치원 소속 교원의 복무를 관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가. 사립유치원 교원 겸직 허가 관련

「유아교육법」 제21조에 따르면 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한다고 되어 있고,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6조에 따르면 「같은 규정」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9장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에 따르면 공무원은 겸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9]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 관련 상세 자료를 소속 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겸직허가를 신청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 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심사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르면 사립학교는 사인 등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등의 학교를 말하며,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교원은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명하되, 사립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임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5조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고, 공무원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고,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울산교육청 사립유치원 인사 업무 길라잡이(2021.12.)」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교원 임용 조건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

9) **(계속성 기준)**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나. 사립유치원 교원 공무외 영리업무 종사 관련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4조 제2항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5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경우 등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9장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근무시간 내에는 전적으로 직무 수행에 전념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외에 다른 영리업무에 종사함으로써 평소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근무시간 내에 겸직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유아교육법」 제13조(교육과정 등) 제3항에서 위임받아 교육부 장관이 정한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2023~2024)」에 따르면 학원과 연계하여 영어 등 방과후 과정을 위탁 운영하거나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학원에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것 등을 부적정 사례로 들고 있다.

따라서 교육청 관내 사립유치원 원장 및 경영자는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소속 교원의 겸직을 허가하여야 했고,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교원의 근무시간을 정하여야 했으며, 사립유치원 교원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직무 수행에 전념하고 공무외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사립유치원 교원 겸직 허가 관련

○△ AB(이하 “AB”라 한다)는 2022. 3. 1.부터 2024. 감사일 현재까지 1년 단위로[10] AA(이하 “AA”이라 한다)를 소속 유치원 정교사로 임용하였다.

그런데, AB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등을 위반하여 ○△ 정교사로 재직(2022. 3 ~ 2024. 감사일 현재) 중인 AA이 [표 1]과 같이 겸직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2023. 2. 24.과 2024. 2. 23. AA의 교습소에서의 공무외 영리업무 겸직을 허가하였다.

[표 1] AA 겸직 허가 과정

구분	겸직 허가 (AB)	→	임용 계약 (AB↔AA)	→	교습소 설립 (AA)	→	겸직 허가 신청 (AA)
2022년	-	→	2022. 3. 1.	→	-	→	-
2023년	**2023. 2. 24.**	→	2023. 3. 1.	→	2023. 3. 16.	→	**2023. 3. 16.**
2024년	**2024. 2. 23.**	→	2024. 3. 1.	→	-	→	**2024. 3. 4.**

※ AA은 2023. 3. 16. 본인 명의로 “○▷”를 설립하여 2024. 감사일 현재까지 공무외 영리업무를 하였다.

그리고 AB는 [그림 1]과 같이 2023~2024년 AA의 겸직 허가 공문에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에 의거하여 겸직을 허가”하며, 겸직 사유는 “A 수업”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림 1] AA 겸직 허가 관련 규정 및 사유

※ 생략

10) 사립유치원 교원은 「유아교육법」 상 교원이나, 계약에 의해 임용하고 있음

아울러, AB는 [표 1]과 같이 겸직 허가 후인 2023. 3. 1.과 2024. 3. 1. AA을 ○△ 2023~2024년 정교사로 임용하였고, AA은 2023. 3. 16. 본인 명의로 “○▷”를 설립하였으며, 2023. 3. 16.과 2024. 3. 4. AB에게 겸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결과적으로 AB는 AA과 임용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AA의 겸직을 허가하였고, AA이 겸직 허가를 신청하기도 전에 AA의 겸직을 허가한 것이다.

한편, ○△이 ‘유치원 알리미’에 공시한 방과후 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의 2022~2024년 방과후 과정 운영 시간은 9시부터 18시로 되어 있고, 2022~2024년 「○△ 교육계획서」및 AB의 문답 진술에 따르면 방과후 과정 운영시간은 평일 13시 30분부터 18시, 방학 기간에는 8시 10분부터 18시까지로 확인되었다. ○△ AB는 2022~2024년 방과후 과정 운영 등을 위해 [표 2]와 같이 정교사 3~4명 등을 임용하였고, AA을 제외한 나머지 교사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정하였다.

[표 2] 방과후 과정 담당교사 등 임용 현황

구분	이름	임용 기간	근무 시간	비고
2022년	-	2022. 3. ~ 2023. 2	09:00 ~ 18:00	방과후 과정 담당 교원
	-		09:00 ~ 18:00	방과후 과정 담당 교원
	AA		**09:00 ~ 18:00**	방과후 과정 담당 교원
2023년	-	2023. 3. ~ 2024. 2	09:00 ~ 18:00	방과후 과정 담당 교원
	-		09:00 ~ 18:00	방과후 과정 담당 교원
	-		09:00 ~ 18:00	방과후 과정 담당 교원
	AA		**08:00~16:00, 17:30~19:30**	**정교사(부담임 등 업무 수행)**
2024년	-	2024. 3. ~ 2025. 2	09:00 ~ 18:00	방과후 과정 담당 교원
	-		09:00 ~ 18:00	방과후 과정 담당 교원
	-		09:00 ~ 18:00	방과후 과정 담당 교원
	AA		**08:00~16:00, 17:30~19:30**	**방과후 과정 담당 교원**

그리고 AB는 [표 3]과 같이 AA의 근무시간을 8시부터 16시까지, 1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주 45시간(일 9시간)으로 정하여 임용[11]하였고, 문답 진술에서 AA의 근무시간을 달리 정한 이유에 대해 “AA이 교습소에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로 근무시간을 조정했다”고 답변하였다.

참고로, AA의 근무시간은 임용 계약을 통해 정해진 것으로 근무시간 변경을 위한 유연근무와는 관계가 없다.

[표 3] 방과후 과정 담당교사 근무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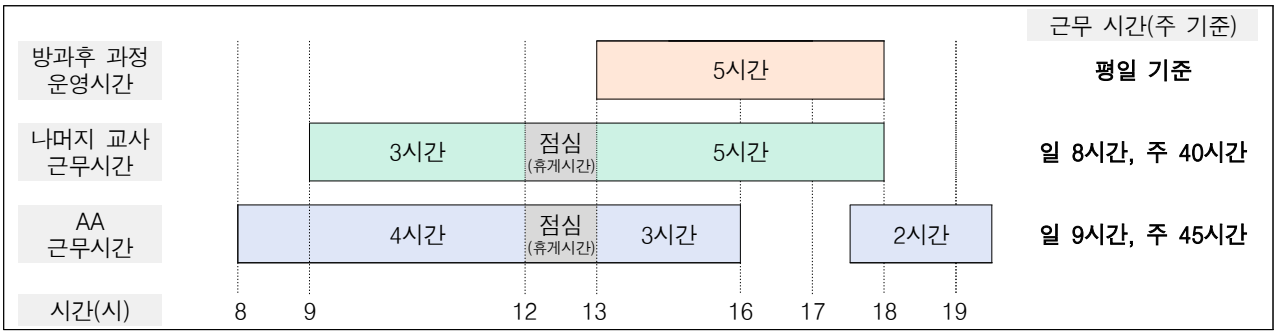

※ AA는 16시부터 17시 30분 사이에 본인이 설립한 ○▷에서 공무외 영리업무에 종사함

나. 사립유치원 교원 공무외 영리업무 종사 관련

1) ○△ AA의 경우

○△ AA은 ○△에 재직(2022. 3. ~ 2024. 감사일 현재) 하면서 2023. 3. 16. [그림 2]와 같이 위 유치원에서 도보로 47m 떨어진 건물에 본인 명의로 ○▷를 설립하였다.

[그림 2] ○▷ 위치

※ 생략

11) 계약서 상에는 주 40시간(08:00~16:00, 17:30~19:30)으로 되어 있으나 **일 근무시간이 9시간임을 고려하면 산술적인 주당 근무시간은 45시간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AA은 [표 4]와 같이 2023. 3. 16.부터 2024. 감사일 현재까지 ○△ 방과후 과정 운영시간인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16시부터 17시 30분까지 본인이 설립한 위 교습소에서 ○△ 원아 14~15명을 대상으로 A 교습을 하는 등 공무외 영리업무(월 약 60만원)에 종사하였다.

[표 4] 교사 AA의 교습소 설립·운영 현황

유치원 재직 현황			학원·교습소 운영 현황			
소속	직위	임용 기간	학원·교습소명	종류	직위	운영 기간
○△	정교사	2023.3.1.~현재	○▷	교습소	설립·운영자	2023.3.16.~현재

교습소 수강생 명단과 수업료는 [별표 1] "○▷ 수강생 대장('23~'24년)", [별표 2] "○▷ 교습비 내역 및 시간표"와 같다.

2) ○♤ AC의 경우

○♤ AC(이하 "AC"이라 한다)은 [표 5]와 같이 2019. 3. 19. "○♧"과 "○☆"을 설립·운영하던 중 2019. 10. 1. ○♤ 원장으로 임용되어 근무해 왔다.

[표 5] AC의 학원 설립·운영 현황

유치원 재직 현황			학원·교습소 운영 현황			
소속	직위	임용 기간	학원·교습소명	종류	직위	운영 기간
○♤	원장	2019.10.1.~현재	○♧	학교교과교습학원	설립자	2019.3.19.~현재
			○☆			

※ AC는 해당 학원의 설립·운영자로 과외교습을 직접 하지는 않음

참고로, ○♧과 ○☆은 [그림 3]과 같이 울산광역시 ㄷ에 있는 ○♤(사립, AD, AC) 건물(공동 소유자 AD, AC)의 2층과 3층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그림 3] ○♤ 일반건축물 대장

※ 생략

또한, AC은 [표 6], [그림 4]와 같이 본인이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 입학설명회에서 교육과정과 함께 학원 프로그램인 “○●”, “○■”를 안내하고 유치원 원아와 학원 수강생을 동시에 모집하였으며, 2024년 기준 ○☆ 수강생 63명에게 월 00만원을, ○♧ 수강생 25명에게 월 00만원의 수강료를 받는 등 2019년부터 5년 넘게 공무외 영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표 6] AC의 유치원, 학원 운영 현황('24년 기준)

연번	구분	유형	교육비	추가 비용	반별 인원	프로그램명
1	○♤	유치원	유아학비 (정부 지원)	특성화프로그램비, 식대비(무상, 지자체 지원)	15~20명	-
2	○☆	학원	월 00만원 (학부모 대상 징구)	식대비, 영어교육비, 교재비	15~20명	-
3	○♧	학원	월 00만원 (학부모 대상 징구)	식대비, 교재비	10명	-

[그림 4] ○♤ 입학설명회 관련 자료

※ 생략

그리고 학원별 세부 수강생 명단과 수업료는 [별표 3] “○♧ 수강생 대장 및 시간표”, [별표 4] “○☆ 수강생 대장 및 시간표”와 같으며, AC은 해당 업무 관련하여 겸직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받지 않았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울산교육청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수용하면서, 향후 교원이 공무외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일이 없도록 사립유치원 교원 임용 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시로 안내하고 현장 컨설팅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② 관련자 의견

[AB의 경우]

○△ AB는 문답 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 등의 관련 법령 등을 잘 숙지하지 못하였고 2003년 유치원 설립 이후 겸직을 허가한 사례가 처음이어서 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절차와 달리 겸직을 허가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AA이 교습소에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8시부터 16시까지, 1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로 조정하였으며, 일일 8시간 근무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다만, 답변서를 통해 향후 교원 임용 시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여 근무시간을 정하고, 공무외 영리업무 및 겸직 허가를 금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AA의 경우]

○△ AA은 유치원 방과후 과정 담당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오전 8시부터 9시까지는 일찍 등원하는 원아 대상 돌봄 업무 및 회계 처리 등의 업무를 하였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이며, 방과후 과정 수업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13시 30분부터 15시 50분까지로, 방과후 과정 수업(화·목 13:30～15:50)을 제외한 근무 시간에는 오전 돌봄업무 지원(일 1시간), 행정업무(출석부, 회계관리)를 담당한다고 문답 시 답변하였다.

또한, AA은 2022년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관련 일부 학부모들이 A 교육을 요청하여 2023년 교습소를 설립하였고, 유치원에서 희망하는 원아를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였으며, 교습소 수강생은 월 15~20명이나 2~4명씩 소수의 인원으로 나누어 매일 16시부터 A 수업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개인사업자 통장을 통해 10주 기준으로 원아당 000,000원을 입금받았으며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고 문답을 통해 답변하였다.

[AC의 경우]

○♤ AC은 답변서를 통해 공무외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하겠다고 답하였고, 2025. 4. 2. 교육청을 통해 유선으로 병원 입원 등으로 인해 현재 추가 문답이나 서면 답변서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③ 검토결과

[AB의 경우]

○△ AB는 2003년 유치원 설립 이후 겸직을 허가한 사례가 처음이어서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겸직 허가 절차를 숙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을 숙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2023~2024년 AA의 겸직 허가 공문에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에 의거하여 겸직을 허가"한다고 명시한 것을 감안하면 관련 법령 등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AB의 주장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AB는 AA이 2023. 3. 16. 설립한 교습소 건물 울산 ㄴ(○△ 옆 건물)의 소유주로 AA과 2023. 3. 1. 0층 000호에 대한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고, AA이 겸직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2023. 2. 24. AA의 공무외 영리업무 겸직을 허가하였으며, 문답 시 “AA이 교습소에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로 근무시간을 조정했다”고 답변하였고, AA의 교습소 운영시간(16시~17시 30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한 것 등에 근거하면, AB는 AA이 교습소 설립하여 공무외 영리업무에 종사할 예정임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유아교육법」 제21조, 「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 등의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소속 교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소속 교원의 공무외 영리업무 겸직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허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겸직이 가능하도록 소속 교원의 근무시간을 정하여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AB의 행위에 대해 신분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A의 경우]

○△ AA은 정교사로 임용되었음에도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등의 법령을 위반하여 본인 명의로 교습소를 설립하고 해당 교습소에서 본인이 재직 중인 유치원 원아 00~00명을 대상으로 A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개인사업자 통장으로 월 약 00만원의 교습비를 수령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등 영리 행위를 지속한 행위에 대해 신분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C의 경우]

○♤ AC은 ○♤과 같은 건물에 두 개의 학원을 설립·운영하면서 ○♤ 교육과정과 함께 학원 프로그램인 “○●”, “○■”를 학부모들에게 안내[12]하여 수강생을 모집하였고,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등의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2019. 3월부터

12) 「유아교육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아 마련된 「유치원 교육과정·방과후 내실화 계획(교육부)」 내 부적정 운영 사례(동일 건물내 학원 등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해당

본인 명의로 ○♧을 설립·운영하여 유치원 교육과정에 원어민 영어 수업 및 교구 수업을 추가하고 2024년 기준 00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월 0,000만원을 교습비로 받았으며, 2019. 3월부터 본인 명의로 ○☆을 설립·운영하여 유치원 교육과정에 교구수업을 추가하고 2024년 기준 00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월 0,000만원을 교습비로 받는 등 유치원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동시에 장기간 공무외 영리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신분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AC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겸직을 허가하는 기관장으로서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이행해야 함에도 본인 스스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겸직 신청·허가 없이 5년 넘게 공무외 영리업무에 종사한 것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AC은 2025. 3. 26. ○☆, ○♧ 설립·운영자 변경을 신청하고, 2025. 4. 2. 교육청을 통해 병원 입원 등을 이유로 문답이나 서면 답변서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후, 2025. 4. 4. 교육청에 ○♤ 원장직에 대해 면직을 보고[13]하는 등 교육부 감사에 소극적인 자세로 임한 바 있다.

징계요구 양정

[AB의 경우]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교원의 복무 등을 지도·감독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겸직 신청을 하지 않은 소속 교원의 공무외 영리업무에 대한 겸직을 허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 교사의 근무시간을 타 교사와 달리 정하여 공무외 영리업무 겸직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한 AB의 행위는 「유아교육법」 제21조(교직원의 임무)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13) 2025. 4. 11. 교육청은 위 면직 보고를 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반려함

「국가공무원법」 제5조(성실의 의무)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를 위배한 것으로,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립학교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그 비위의 정도나 행위를 고려할 때 경징계 이상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AA의 경우]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등에 전념하여야 함에도 2023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소속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운영시간(16:00~17:30)에 본인이 설립한 교습소에서 소속 유치원 원아를 대상으로 영리업무에 종사한 ○△ AA의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조(성실의 의무) 및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를 위배한 것으로,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립학교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그 비위의 정도나 행위를 고려할 때 경징계 이상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AC의 경우]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교원의 복무를 지도·감독하는 등 업무에 전념해야 함에도 2019년부터 2024년 감사일 현재까지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본인 명의로 두 개의 학원을 설립·운영하면서 유치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 교육과정과 함께 학원 프로그램인 "○●", "○■"를 학부모들에게 안내하여 수강생을 모집하였고, 5년 넘게 장기간 공무외 영리업무에 종사한 AC의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조(성실의 의무) 및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를 위배한 것으로,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립학교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그 비위의 정도나 행위를 고려할 때 엄중하게 처분해야 하나, 병원 입원 등을 사유로 문답을 거부하고 있어 울산교육청으로 하여금 절차에 따라 처분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교육감**은

①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소속 교원이 겸직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겸직을 허가하고, 겸직 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여 공무외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 ○△ AB에 대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징계 조치(경징계 이상)하고, **(징계)**

②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공무외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등 본인의 직무를 소홀히 한 ○△ AA에 대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징계 조치(경징계 이상)하도록 하며, **(징계)**

③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공무외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등 본인의 직무에 소홀하였으나 감사 절차에 응하지 않은 ○△ AC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 처분 등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통보)**

【관련자 명세 별첨】

④ 유치원 교원의 공무외 영리업무 종사 여부와 유아 학습자가 있는 교습소 및 유치원 교육과정과 학원 원어민 영어 수업 등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을 점검하여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시기 바라며, **(통보)**

⑤ 아울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 교원의 겸직 허가 및 복무 관리 등에 대한 지도·관리 방안과 학원·교습소 설립 허가 시 현직 교원 명단을 대조하는 등 실효성 있는 교원의 공무외 영리업무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표 1]

○▷ 수강생 대장('23~'24년)

※ 생략

[별표 2]

○▷ 교습비 내역 및 시간표

※ 생략

[별표 3]

○♧ 수강생 대장 및 시간표('24년)

※ 생략

[별표 4]

○☆ 수강생 대장('24년) 및 시간표

※ 생략

교 육 부

주의·통보

제 목 **학원 위치 변경 후 배상책임보험 가입 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조 치 기 관 울산광역시교육청

내 용

1. 업무개요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울산교육청”이라 한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자가 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수강생을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미이행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하는 등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학원법」제4조 제3항, 제6조 제1항, 제16조, 제23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고, 학원 설립·운영자는 학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리고 학원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학원 설립·운영자는 설립 등록 절차와 동일하게 교육감에게 학원의 위치 변경을 등록하여야 하고,[14]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변경된 위치로 다시 학원배상책임보험도 가입해야 한다.

---

14) <학원 위치 변경 등록절차>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교육감은 이와 같은 학원 설립·운영의 변경 등록 수리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15)]

또한,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5, 제16조 및 <별표 1-1> 위반사항별 벌점기준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조례에 따른 보험[16)] 등은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 등의 가입증서 사본을 가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반복 횟수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17)]

신청인	⇨	교육지원청 담당자	⇨	교육지원청 담당자
관할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위치 변경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위치 변경 장소의 시설, 안전 사항, 면적 등 현장 확인		신청인에게 7일 이내 변경 등록 결정여부 통보, 위치변경 승인 후 변경된 위치로 등록증 재발급

* (신청 구비서류) 변경신청서 1부, 건출물관리대장 1부(용도, 주소 확인), 시설평면도 1부(면적 기재),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1부, 학원등록증명서 원본 1부, 주민등록증(신분증),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참고> 학원 설립 절차

신청서 제출	⇨	서류 검토	⇨	아동학대·성범죄, 결격사유 조회	⇨	소방검사 의뢰	⇨	현장 실사	⇨
신청인→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행정정보공동이용)		교육지원청→소방서		적합 여부 현장 확인	

결과 통보	⇨	면허세 납부	⇨	등록증 교부	⇨	학원배상책임보험	⇨	사업자등록증 발급	⇨	학원 운영
교육지원청		신청인→구청 세무과		교육지원청→신청인		신청인		신청인→세무서		신청인

15) 「학원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구분	과태료 금액(만원)
가.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
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0
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90
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20
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0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

16) 1인당 배상금액 1.5억 원 이상(2023.12.28.개정), 사고당 배상금액 10억 원 이상(「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17)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1] 위반사항별 벌점기준

따라서 교육지원청은 학원 설립·운영자가 학원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변경된 위치로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학원배상책임보험을 다시 가입하도록 지도하였어야 했고, 점검을 통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및 벌점을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울산광역시 ○◭ 및 ○◭은 [별표] “2024년 학원 위치 변경 후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현황”과 같이 2024년 이후 관내 23개 학원(○◭ 14개, ○◭ 9개)의 설립·운영자가 학원의 위치를 변경하면서 관할 교육지원청에 변경 등록을 완료하고도 2024. 6월 감사일 현재까지 변경 등록일로부터 적게는 14일, 많게는 137일이 경과하도록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도 관련 점검 및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관계기관 의견

울산교육청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수용하면서, 통상 학원의 위치 변경 업무가 완료되면 교육지원청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데 당시 담당자들이 학원 위치 변경 시 배상책임보험을 변경된 위치로 재가입

구분	위반사항	위반 및 위반정도	반복 횟수별 벌점		
			1차	2차	3차
운영	수강생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	미가입	10	20	30
		배상기준미달	5	10	15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벌점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벌점	30점 이하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66~70	71점 이상
행정처분	경고	정지 7일	정지 15일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75일	정지 90일	등록 말소

해야 한다는 규정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동 사안이 발생한 것 같다고 답변하면서, 현재는 교육지원청에서 학원 위치 변경 신청 시 배상책임보험의 재가입과 변경을 미리 안내하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배상책임보험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시행하는 등 관련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교육감**은

① 위치를 변경한 학원이 변경된 위치에서 배상책임보험을 다시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도 지도·점검하지 않은 ○◭ AE 등 4명에게 주의 조치하고, **(주의)**

【관련자 명세 별첨】

② 위치를 변경하고도 변경된 위치에서 배상책임보험을 다시 가입하지 않은 학원에 대해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표]

2024년 학원 위치변경 후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현황

순	지역 교육청	시설명	설립자	최초 설립일	변경 등록일	변경 전				변경 후				최근 책임배상보험 가입 현황				갱신 도과일수
						위치	교습과정	시설면적 (㎡)	정원(명)	위치	교습 과정	시설면적 (㎡)	정원(명)	보험 시작일	보험 만료일	배상기준(억원)		
																1인당	사고당	
1	○▲ (14개)	-	-	-	-	울산광역시 ㄷ	-	-	240	울산광역시 ㄴ	-	-	120	2024-01-23	2025-01-23	1.5	10	14
2		-	-	-	-	울산광역시 ㄴ	-	-	260	울산광역시 ㄴ	-	-	588	2024-06-11	2024-07-21	1	10	137
3		-	-	-	-	울산광역시 ㄹ	-	-	102	울산광역시 ㄹ	-	-	246	2024-04-24	2025-04-24	1.5	10	84
4		-	-	-	-	울산광역시 ㅁ	-	-	170	울산광역시 ㅁ	-	-	234	2024-06-11	2024-08-28	1	10	131
5		-	-	-	-	울산광역시 ㄴ	-	-	153	울산광역시 ㄴ	-	-	136	2024-06-07	2025-01-21	1.5	10	102
6		-	-	-	-	울산광역시 ㅁ	-	-	208	울산광역시 ㅁ	-	-	162	2024-04-24	2025-04-24	1.5	10	55
7		-	-	-	-	울산광역시 ㄷ	-	-	90	울산광역시 ㄴ	-	-	110	2024-04-13	2025-04-12	1.5	10	36
8		-	-	-	-	울산광역시 ㄴ	-	-	174	울산광역시 ㄴ	-	-	252	2024-06-11	2024-11-10	1	10	89
9		-	-	-	-	울산광역시 ㄴ	-	-	510	울산광역시 ㄴ	-	-	180	2024-04-17	2025-04-17	1.5	10	28
10		-	-	-	-	울산광역시 ㄴ	-	-	400	울산광역시 ㄴ	-	-	325	2024-04-29	2025-04-29	1.5	10	38
11		-	-	-	-	울산광역시 ㅁ	-	-	360	울산광역시 ㅁ	-	-	345	2024-06-18	2025-02-28	3	10	78
12		-	-	-	-	울산광역시 ㄹ	-	-	366	울산광역시 ㄹ	-	-	300	2024-06-18	2025-02-21	1.5	10	57
13		-	-	-	-	울산광역시 ㅁ	-	-	126	울산광역시 ㅁ	-	-	210	2024-06-08	2025-06-08	1.5	10	40
14		-	-	-	-	울산광역시 ㄴ	-	-	364	울산광역시 ㄴ	-	-	854	2024-06-29	2025-06-29	1.5	10	52

순	지역 교육청	시설명	설립자	최초 설립일	변경 등록일	변경 전				변경 후				최근 책임배상보험 가입 현황				갱신 도과일수
						위치	교습과정	시설면적 (㎡)	정원(명)	위치	교습 과정	시설면적 (㎡)	정원(명)	보험 시작일	보험 만료일	배상기준(억원)		
																1인당	사고당	
15	○▲ (9개)	-	-	-	-	울산광역시 ㄷ	-	-	205	울산광역시 ㄷ	-	-	208	2023-07-02	2024-07-02	1	10	56
16		-	-	-	-	울산광역시 ㄷ	-	-	180	울산광역시 ㄷ	-	-	180	2024-06-08	2025-06-08	1.5	10	124
17		-	-	-	-	울산광역시 ㄷ	-	-	1088	울산광역시 ㄷ	-	-	600	2024-04-29	2025-04-29	1.5	10	62
18		-	-	-	-	울산광역시 ㅂ	-	-	120	울산광역시 ㅂ	-	-	98	2024-04-23	2025-04-23	1.5	10	28
19		-	-	-	-	울산광역시 ㄷ	-	-	112	울산광역시 ㄷ	-	-	528	2019-10-10	2024-10-10	1	10	127
20		-	-	-	-	울산광역시 ㄷ	-	-	90	울산광역시 ㄷ	-	-	60	2023-08-29	2024-08-29	1	10	39
21		-	-	-	-	울산광역시 ㄷ	-	-	180	울산광역시 ㄷ	-	-	310	2020-03-10	2025-03-10	1	10	39
22		-	-	-	-	울산광역시 ㄷ	-	-	133	울산광역시 ㄷ	-	-	351	2023-10-25	2024-10-25	3	10	45
23		-	-	-	-	울산광역시 ㄹ	-	-	70	울산광역시 ㄷ	-	-	135	2024-05-17	2025-05-17	1.5	10	15

교 육 부

통 보

제 목 **교원 수당 지급 부적정**

소 관 기 관 울산광역시교육청, ○▲ 등 14개교

조 치 기 관 울산광역시교육청

내 용

1. 업무개요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울산교육청”이라 한다)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한다)」등에 따라 관할 내 각급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명절휴가비, 원로교사수당, 파견교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가. 명절휴가비 지급 관련

「국가공무원법」제47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1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무원수당규정」(대통령령) 제18조의3에 따르면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명절휴가비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및 직위해제,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 기간에 지급기준일인 명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나. 원로교사수당 지급 관련

「공무원수당규정」(대통령령) 제14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별표 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2. 교육 및 연구분야 다. 교직수당에 따르면 원장·원감·교장·교감·수석교사·교사 등에 월 25만원의 교직수당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가산금 지급대상을 정하여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 가산금 지급 대상 1)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 및 수석교사(교장·교감 제외)로 정하여 월 5만원의 가산금(이하 '원로교사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 파견교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관련

「공무원수당규정」(대통령령) 제15조는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41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18]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등을 위해 장기(1개월 이상) 파견된 국가공무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가, 나, 다를 종합하면 울산교육청은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공무원인 교원에게 명절휴가비, 원로교사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명절휴가비 지급 관련

울산교육청 관내 ○▲ 등 2개교는 2021. 2.부터 2023. 8.까지 [별표 1]“명절휴가비 지급 부적정 현황”과 같이 자율연수휴직 및 정직 기간이 지급기준일인 명절에 포함되어 있어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이 아닌 AF 등 교원 2명에게 명절휴가비 합계 6,333,42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로교사수당 지급 관련

울산교육청 관내 ○▶ 등 9개교는 2019. 1.부터 2024. 6.까지 [별표 2] “원로교사수당 지급 부적정 현황”과 같이 교감으로 재직하고 있어 원로교사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AG 등 8명에게 원로교사수당 합계 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파견교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관련

울산교육청 관내 ○▼ 등 4개교는 [별표 3] “파견교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현황”과 같이 「공무원 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한 장기(1개월 이상) 파견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AH 등 교원 4명에게 시간외근무수당 합계 1,413,750원을 지급하였다.

---

18) 「공무원임용령」 제1항 제4호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1항 제6호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의견

울산교육청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수용하면서, 동 사안의 원인은 일부 업무 담당자의 법령·지침 미숙지, 급여 지급 시 신분변동 사항에 관한 담당자 간의 상호 연계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보수 규정, 각종수당 지급방법, 담당자와의 협력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안내를 통해 업무담당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수당 과오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교육감**은

과다 지급된 수당 합계 16,747,170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는 등 적절히 조치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당 지급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표 1]

명절휴가비 지급 부적정 현황

(단위: 원)

연번	지급 대상					명절일자	오지급액
	소속	직급(위)	성명	구분	휴직(징계)기간		
1	○▲	-	AF	-	-	-	-
2	-	-	-	-	-	-	-
합계							6,333,420

[별표 2]

원로교사수당 지급 부적정 현황

(단위: 원)

연번	소속	직급(위)	성명	승진발령일	오지급 기간	오지급액 (지급내역)
1	○▶	-	AG	-	-	-
2	-	-	-	-	-	-
3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합계						9,000,000

[별표 3]

파견교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현황

(단위: 원)

연번	파견자			파견내용			오지급액
	원소속기관	직급(위)	성명	파견기간	파견목적	파견기관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교사	AH	-	-	-	-
합계							1,413,750

교 육 부

기관주의·통보

제 목 **지방공무원 등 학습휴가 및 가족돌봄휴가 사용 부적정**

소 관 기 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 등 18개 기관

조 치 기 관 울산광역시교육청

내 용

1. 업무개요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울산교육청”이라 한다)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 복무관리 지침」 등에 따라 교육공무원,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가. 학습휴가 사용 관련

「평생교육법」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서 위임한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이하 “복무조례”라 한다)」 제19조 제7항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은 「평생교육법」 제8조에 따라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 6일 이내[19]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19) ’23. 12. 28. 개정·시행 (개정 전 「복무조례(2020. 12. 17. 개정, 2021. 1. 1. 시행)」 에 따르면 연 4일)

한편, 「울산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르면 교육공무직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울산교육청·○◕의 교육공무직 단체협약서」제63조 제1항 및 「울산교육청 교육공무직 취업규칙」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학습휴가는 유급으로 연 5일 이내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

나. 가족돌봄휴가(유급) 사용 관련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제8조 제4항에 따르면 교원의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따른다고 되어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4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제20조(특별휴가) 제14항 및 제15항에 따르면 1.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14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의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20]

---

20) 같은 내용으로 ①지방공무원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특별휴가) 제9항, ②교육공무직은「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공무직 취업규칙」제13조 및「교육공무직 단체협약」제63조제1항제12호에 따름

따라서 가, 나를 종합하면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은 「복무조례」 등에 따라 학습휴가를 사용일수 한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하고, 교원,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 이외의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신청하거나 연가(유급)를 사용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학습휴가 초과 사용

울산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은 '23. 12. 28.자 조례 개정·시행 이전은 연 4일 이내, '23. 12. 28.자 조례 개정·시행 이후는 연 6일 이내, 교육공무직은 연 5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나, [별표 1] "학습휴가 초과 사용 현황"과 같이 □과 AI 등 21명은 최소 1일~최대 3일을 초과하여 학습휴가를 사용하였다.

나. 가족돌봄휴가 유급 사용 부적정

울산교육청 소속 직원은 손자녀의 병원 진료 동행, 부모 돌봄 등에 대해서는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별표 2] "가족돌봄휴가 유급 사용 부적정 현황"과 같이 ○◀ AJ 등 14명이 최소 1일에서 최대 5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가. 학습휴가 초과 사용 관련

① 관계기관 등 의견

울산교육청은 직원들이 학습휴가 총 사용일수를 착오로 판단하였거나 학습휴가는 1일 단위로만 사용가능함에도 시간단위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일어난 일이라고 하였고, 지적받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속 기관에 휴가 최대 사용가능일수 및 사용방법을 공문으로 안내하였으며 추후 감사에서 동일한 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특별휴가를 초과 사용한 일수는 연차로 전환하여 기지급된 연차보상비에서 초과 사용일수만큼 환수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과 AK는 학습휴가 사용일수를 착오로 판단하여 잘못 사용하였다는 다른 직원들의 의견과 달리 퇴직 후 다시 임용되는 경우 퇴직 전 학습휴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학습휴가가 재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학습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② 검토결과

AK는 재임용 후 학습휴가가 재발생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Ⅷ. 휴가에 따르면 퇴직 후 당해 연도에 재임용된 공무원의 휴가일수 산정 시 퇴직 전 근무기관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재임용한 경우 학습휴가가 재발생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AK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가족돌봄휴가 유급 사용 관련

① 관계기관 의견

울산교육청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수용하면서, 직원들이 가족돌봄휴가 사용요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유급 휴가를 신청하였다며 유급으로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일수만큼 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아울러, 소속 교직원 복무 관련 교육을 통해 복무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향후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 근무 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교육감**은

①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습휴가 및 가족돌봄휴가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기관주의)**

② □과 AI 등 35명이 잘못 사용한 학습휴가 및 가족돌봄휴가를 관련 법령에 맞게 연가 대체 및 환수 등 적절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표 1]

학습휴가 초과 사용 현황

※ 생략

[별표 2]

가족돌봄휴가 유급 사용 부적정 현황

※ 생략

교 육 부

기관경고·징계·경고·주의

제 목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 명부 오작성 및 부당 승진**

소 관 기 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조 치 기 관 울산광역시교육청

내 용

1. 업무개요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울산교육청”이라 한다) △과, ▷과, ○과는 「울산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교육·상훈·복무·징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 제51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교육공무원법」제2조,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를 포함하고,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며, 승진임용은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 중에서 경력평정,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2년 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장학관(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을 충족한다고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자격별 승진후보자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순위에 따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할 때에는 명부에 따른 순위가 결원된 직위 중 승진으로 임용하려는 인원의 3배수 이내인 사람 중에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조 및 제2조에 따르면 동 규정은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달한 자에게 적용된다고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 및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에 따르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명부의 고순위자 순위에 의하여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안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하고, 장학관(교육연구관)의 자격 기준에 달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될 직위별로 나누어 명부를 작성하되 평정점[21]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승진후보자 순서대로 등재해야 하며, 평정점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는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규정」 제43조 및 제47조에 따르면 명부는 매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강임·전직되거나 명부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또는 징계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명부에서 이를 삭제하고 그 사유를 명부에 기재[22]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21) 경력평점점 70점, 근무성적평정점 100점, 연수성적평정점 15점을 각각 만점으로 평정

22) (기재요령) 명부에서 삭제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란을 붉은 선으로 긋고, 비고란에 삭제 사유 및 삭제일을 적은 후 작성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하고,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결재문서와 문서 사이 및 명부 각 장의 사이에는

한편, ○◆은 ‘2018년 교육부 감사’를 통해 승진희망자에게만 평정 서류를 제출받아 명부에 포함시키는 등 관련 법령 등과 달리 작성된 명부를 기준으로 정당한 명부 순위 3배수 밖에 있는 자를 승진시킨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자 징계를 요구받았음에도, ‘2023년 ○○ 정기감사’에서 “교육부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장학관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전부 명부에 등재하기는 하였으나 그 중 승진포기원을 제출한 적격자를 제외하고 승진 가능 배수 범위를 산정하는 등 법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명부에서 사실상 삭제(승진희망자만을 대상으로 명부를 부당 작성한 2018년 지적사항과 같은 효과 발생)한 명부 순위로 승진임용 3배수 밖에 있는 장학사를 장학관으로 승진임용시키는 등 승진인사의 적법성·공정성 논란을 또다시 발생시킨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은 교육부로 하여금 승진희망자만을 대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거나 승진포기원을 제출하였다는 사유로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를 승진 가능 배수 범위 산정 시 제외하는 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 인사행정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처분한 바 있고, 교육부 ◇과는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2024년 2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17개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근거하여 승진희망자만을 대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거나, 승진 포기원을 제출하였다는 사유로 승진 가능 배수 범위 산정 시 제외하지 않도록 하여 인사행정의 적법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작성권자가 간인(間印: 걸침도장)을 하고 쪽표시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울산교육청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모든 적격자를 대상으로 명부를 작성하여야 했고, 평정 방법을 준수하고 명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했으며, 승진임용 시에는 명부의 고순위자 순위에 의하여 승진 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안에서 임용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명부 작성 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적격자 누락

1) 유치원·초등 장학관(교육연구관) 명부 작성 시 적격자 일부 누락

감사기간에 해당되는 2022. 3. 31.자부터 2024. 3. 31.자까지 유치원·초등 장학관(교육연구관) 명부를 확인한 결과, [별표 1] “유치원·초등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 명부 오작성 현황”과 같이 유치원·초등 장학관(교육연구관) 명부 작성 시 자격기준에 도달한 후보자 총 0명이 명부에 등재되지 않고 누락되었다.

2) 중등 장학관(교육연구관) 명부 작성 시 적격자 누락 및 포기원 징구

감사기간에 해당되는 2021. 3. 31.자부터 2024. 3. 31.자까지 중등 장학관(교육연구관) 명부를 확인한 결과, [별표 2] “중등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 명부 오작성 현황”과 같이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 기준에 도달한 장학사(교육연구사) 총 000명(누계) 중 평정서류를 제출한 사람 00명(누계)만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 총 4차례 총 000명의 적격자가 명부에 등재되지 않고 누락되었다.

울산교육청(▷과)은 [표 1]과 같이 20xx.xx.xx.자, 20xx.xx.xx.자, 20xx.xx.xx.자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인사담당자 회의에서 “명부작성요령”을 배포하면서, “장학사·교육연구사 경력 2년 이상인 자 의무 제출하되, 희망하지 않을 경우 포기원 제출(별도 양식 없음)”이라고 적시하여, 상기 000명으로부터 법령 등 관련 규정에 근거가 없는 포기원을 징구하였다.

[표 1] 2022. 중등 교육공무원 승진 및 자격연수 대상자 후보자 명부작성요령(발췌)

※ 생략

또한, [별표 3] “중등 특수 장학관 승진후보자명부 미작성 현황”과 같이 장학관(교육연구관) 자격기준에 도달한 승진후보자(총 0명, 누계)가 있었음에도 명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xx.xx.xx.자 중등 장학관 명부를 정상적으로 작성하였다면 20xx.xx.xx.자(승진예정인원 0명) 장학관 승진심사 시 승진임용 배수 범위에는 포함되나, 저순위자인 AL, AM이 오작성된 명부로 순위가 상승하였다.

나. 명부 평정 방법 미준수 및 명부 관리 미흡

감사기간동안 울산교육청이 작성·관리한 자격별·승진될 직위별 명부를 확인한 결과, [별표 4] “승진후보자명부 평정 방법 미준수 현황”과 같이 초등 교장, 초등 장학관(교육연구관) 명부에서 00명의 근무성적평정점 또는 합산점 등을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해야 하는 계산이 잘못되었다.

또한, [별표 5] “승진후보자 명부 관리(기재요령 준수) 현황”과 같이 명부에서 삭제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란을 붉은 선으로 긋고 비고란에 삭제 사유 및 삭제일을 적은 후 작성자가 서명날인하여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고, 결재문서와 문서 사이 및 명부 각 장 사이에는 작성권자가 간인하고 쪽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교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과·▷과 모두 명부의 비고란에 삭제 사유 표기 및 붉은 선 표기 누락, 삭제 사유 및 표기 후 서명날인은 하였으나 작성권자의 결재 누락, 또는 간인 및 쪽표시 미비 등 명부 관리에 소홀하였다.

다. 오작성된 명부로 부당 승진

울산교육청 ▷과가 포기원을 징구하는 등 다수의 적격자를 제외하여 명부를 오작성한 결과, [표 2]와 같이 20xx.xx.xx.자 중등 교육연구관 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였다면 20xx.xx.xx.자(승진예정인원 0명) 교육연구관 승진심사 시 승진임용 배수 범위(0위)에 포함되지 않아 승진할 수 없는 AN이 오작성된 명부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배수 내 순위(0위)로 보고·심의되어 교육연구관으로 승진 발령되었다.

[표 2] 승진배수 외 교육연구관 부당 승진 현황

※ 생략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울산교육청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수용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 조치하여 향후 이루어질 인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답하였다. 지적사항별로 구체적으로 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명부 작성 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적격자 누락

1) 유치원·초등 장학관(교육연구관) 명부 작성 시 적격자 일부 누락

울산교육청은 유치원·초등 장학관(교육연구관) 명부에서 일부 누락자가 발생한 이유는 20xx.xx., 20xx.xx. 개최된 인사위원회[23]에서 심의·의결된 20xx.xx.xx.자, 20xx.xx.xx.자

23)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1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자문할 수 있는 기구로서, 교육공무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 및 기준의 결정과**

유·초등 교육전문직원 인사기본계획[24] 내 “4. 직급별 인사원칙 다.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은 동일 직위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발생한 사안으로, 이는 장학사·교육연구사로서 2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장학관(교육연구관)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는 법령 해석을 장학사로서 근속 2년, 교육연구사로서 근속 2년으로 잘못 해석한데서 기인한 것이지 특정인을 위한 인사 혜택을 고려한 것은 아니었다며, 이를 20xx.xx월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xx.xx.xx.자 인사기본계획에서 바로 잡아 “4. 직급별 인사원칙 다.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은 2년 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개정·보완하여 그 이후부터는 누락된 적격자가 없었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명부를 철저히 작성하겠다고 답변하였다.

2) 중등 장학관(교육연구관) 명부 작성 시 적격자 누락 및 포기원 징구

울산교육청은 중등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 기준에 달한 장학사(교육연구사) 총 000명(누계, 중등 특수 포함 시 000명) 중 평정서류를 제출한 00명(누계)만 장학관(교육연구관) 명부에 등재되고, 총 000명(중등 특수 포함시 000명)의 적격자가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이유는,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될 직위별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인사에 관한 조례 및 규칙 제·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음

24) 통상, 교육공무원 3.1.자, 9.1.자 인사 발령 한두달전에 개최하고, 안건으로는 ① 3.1.자(9.1.자) 유·초·중등 신규 교(원)장, 중임교장, 원로교사 임용 추천 심의, ② 3.1.자(9.1.자) 교장공모제 운영학교 교장임용 추천 심의, **③ 3.1.자(9.1.자) 유·초등 교(원)장·교(원)감·교육전문직원 인사기본계획 심의,** ④ 3.1.자(9.1.자) 유치원 원장·원감·교육전문직원 승진·전직 임용 추천 심의, ⑤ 3.1.자(9.1.자) 초등 교장·교감·교육전문직원 승진·전직 임용 추천 심의, ⑥ 3.1.자(9.1.자) 중등 교장·교감·교육전문직원 인사기본계획 심의, ⑦ 3.1.자(9.1.자) 중등 교장·교감·교육전문직원 승진·전직 임용 추천 심의, ⑧ 3.1.자(9.1.자) 초·중등 초빙교사 임용 추천 심의, ⑨ 3.1.자(9.1.자) 초·중등 수석교사 재임용 추천 심의 등이 있음

나누어 명부를 작성하되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승진후보자의 순서대로 등재해야 하고, 승진 임용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명부의 고순위자 순위에 의하여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안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라는 법령이 강제성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했고, 2021년 이전부터도 본인 의사로 승진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평정 서류를 제출받지 않아 왔기에 발생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이를 구체화하여 20xx.xx.xx.자, 20xx.xx.xx.자, 20xx.xx.xx.자 명부 작성을 위한 인사담당자 회의에서 제작·배포한 “명부작성요령”에 ‘장학사·교육연구사 경력 2년 이상인 자 의무 제출하되, 희망하지 않을 경우 포기원 제출(별도 양식 없음)’을 적시하였고 이에 따라 포기원을 징구하고 평정 서류를 제출한 희망자만 명부에 등재하고 승진임용했다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인사행정 방식이 특정인에 대한 혜택 또는 불이익을 위한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적격자를 제외하지 않고 제대로 20xx.xx.xx.자 명부를 작성하였다면 승진임용 배수 범위(0배수)에는 포함되지만 순위상 저순위자였기에 20xx.xx.xx.자 장학관으로 승진임용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AL, AM 관련해서는 명부가 오작성되었고 오작성된 명부를 활용하여 인사위원회를 실시하고 승진임용하였던 점은 인정하나, 정상적으로 작성한 명부를 활용한다고 할지라도 AL, AM이 20xx.xx.xx.자 승진예정인원 0명의 3배수인 0위 내에 포함되므로 당시 장학관 공석이었던 ♡과 ♧팀, ♤과 ☆팀의 업무 특수성을 감안하면 전공과목이 전문교과인 AL과 전공과목이 B인 AM이 승진임용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럼에도, 앞으로는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중등 장학관(교육연구관) 명부 작성에 있어 ‘2년 이상의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 경력이 있는 사람은 모두 의무 제출’하도록 하여 관련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나. 명부 평정 방법 미준수 및 명부 관리 미흡

울산교육청(△과)은 초등 교장·장학관 명부 작성 시 평정 방법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는 근무성적평정점 또는 합산점 등을 계산할 때 서열명부 작성 프로그램(엑셀)의 함수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해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릿수에서 반올림 시 계산 오류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나, 동 오류로 인해 명부 순위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달라고 답하였고, 앞으로는 평정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부를 작성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아울러, 울산교육청 업무담당부서(○과·△과·▷과) 모두는 명부 삭제 시 붉은 선 표기 및 작성권자의 결재 누락 등이 발생한 이유는 업무 담당자의 실수로 판단되나, 앞으로는 명부 삭제 시 기재요령을 준수하여 명부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다. 오작성된 명부로 부당 승진

울산교육청은 20xx.xx.xx.자로 AN이 교육연구관으로 승진한 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명부를 작성하였다면 승진발령이 불가능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오래전부터 장학관(교육연구관) 명부 작성 시 본인의 의사로 승진을 희망하지 않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장학사(교육연구사)는 명부에서 제외한 것에서 발생한 결과였다며 AN에게 인사 특혜를 부여하려는 의도를 갖고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고 답하였다.

② 관련자 의견

다. 오작성된 명부로 부당 승진 관련

20xx.xx.xx.자 명부 작성 시 포기원을 징구하여 적격자 00명 중 00명[25]을 명부에서

25) (20xx.xx.xx.자) 중등장학관 후보 적격자 00명/누락자 00명, 중등특수장학관 후보 적격자 0명/누락자 0명, 중등교육

제외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제대로 작성된 명부로는 승진할 수 없었던 AN이 승진하는 결과를 초래한 당시 업무 담당 AQ는 승진 불원(不願) 시 포기원을 제출하라는 "명부작성요령"을 본인이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고, 당시 인사 업무를 처음 맡아 전임자의 업무 처리방식을 따라 포기원을 공문으로 징구하였고 본인은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포기원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였고,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명부로 승진이 전도되어 AN이 승진한 사항을 확인하고 인정하였다. 다만, 포기원을 징구하여 적격자를 명부에서 제외하는 업무처리과정에 상급자의 지시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AO는 담당자 회의 등을 통해 적격자의 서류 제출을 강조했으나 자격 요건을 충족한 승진후보자임에도 서류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중등의 경우 유치원·초등과는 달리 과목의 특수성도 있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례적으로 포기원을 징구하고 명부에서 제외하였다고 답하였다. 또한, AN과는 얼굴 정도만 알지 친분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당시 포기원 제출을 안내했을 때 승진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포기원을 징구한다는 민원을 제기받은 적은 있었다면서, 적격자는 평정 서류 제출이 의무인데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려면 승진 포기서를 제출해야 인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 오해를 해소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AP는 포기원 징구를 관례로 생각하였다며 문제가 되는 관례인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하면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AN을 승진임용하고자 심의한 것은 기억하나,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적격자를 대상으로 명부를 작성하는 유치원·초등 명부와 다수의 적격자들로부터 포기원을 징구하여 적격자가 제외된 중등 명부를 비교할 여유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평정 서류 제출을 만류받은 한 후보자가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음은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연구관 후보 적격자 00명/누락자 0명

③ 검토결과

가. 명부 작성 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적격자 누락 관련

1) 유치원·초등 장학관(교육연구관) 명부 작성 시 적격자 일부 누락

유치원·초등 장학관(교육연구관) 명부 작성 시 일부 적격자가 누락된 것 관련해서는, 울산교육청 ○과와 △과가 법령 해석을 잘못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인사기본계획 내 직급별 인사원칙으로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은 동일 직위 2년 이상 근무한 자(장학사 근속 2년, 교육연구사 근속 2년)를 대상으로 한다”고 심의·의결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로 인해 2년 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 경력을 소지한 적격자 중 일부가 명부에서 누락된 사실은 변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누락된 후보자가 극히 일부인 점, 누락자 모두 저순위자로 부당한 승진이 발생하지 않은 점, 20xx.xx.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법령 해석을 바로 잡아 추후 적격자가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처분 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중등 장학관(교육연구관) 명부 작성 시 적격자 누락 및 포기원 징구

울산교육청 ▷과가 관련 법령 등에 근거없이 평정서류를 제출한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 희망자만 명부에 등재하거나, 승진 포기원을 제출하도록 하여 사실상 명부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결과적으로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등에서 정하는 바와 달리 승진임용 가능 배수(3배수 이내)를 확장시키고 있는 점은 승진 인사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그러한 부당 행위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희망자만을 대상으로 명부를 작성하고 다수의 적격자들로부터 승진 포기원을 제출하도록 한 점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저순위자라도 승진 가능 배수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임용권자에 의해 승진 임용될 수도 있다는 점과 전공 과목 특성을 반영하여 저순위자가 승진할 수도 있었다는 교육청의 의견은 처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나. 명부 평정 방법 미준수 및 명부 관리 미흡 관련

초등 명부에서 평정점을 계산할 때는 소수점 이하는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평정 방법에 일부 오류가 발생한 사항 관련해서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의 반올림 계산 오류로 명부 순위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은 점과 앞으로는 명부 작성 시 평정점을 계산할 때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계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와 감독을 다하겠다고 답한 점을 처분 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명부 삭제 시 기재요령을 준수하지 않아 명부 관리가 미흡했던 것 관련해서는, 수기 명부에 붉은 줄을 긋거나 결재를 득하지 않은 점 등은 사실이나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회의자료내 승진가능배수 명부 포함)에는 전직 등으로 삭제된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고 심의·의결하여 순위 변동이 발생하지 않은 점과 앞으로는 담당부서(○과·△과·▷과) 모두 명부 삭제 시 기재요령을 준수하겠다고 답한 점은 처분 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오작성된 명부로 부당 승진 관련

“명부작성요령”에 “희망하지 않을 경우 포기원 제출”이라고 적시한 인사 자료집을 제작·배포·활용하여 승진 포기원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으로 적격자를 제외하지 않고 제대로 작성된 명부였다면 승진 가능 배수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AN)가 순위가 전도되어 승진 가능 배수 내에 포함되어 부당하게 승진하는 결과를 초래한 업무 담당자에게는 신분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징계요구 양정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달리 평정 서류를 제출한 승진 희망자만 명부에 등재하거나, 법령 등에 근거없이 승진 포기원을 제출하도록 하면서 사실상 명부에서 제외하고 부당하게 작성된 오명부를 적용하여 제대로 명부를 작성하였다면 승진할 수 없었던 AN이 부당하게 승진임용되는 결과를 초래한 AP, AO, AQ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에 위배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따라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그 비위의 정도나 과실을 고려할 때 경징계 이상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교육감**은

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와 달리 적격자 누락, 평정 방법 계산 오류, 기재요령 미준수 등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담당부서(○과, △과, ▷과)에 경고 조치하고, **(기관경고)**

② 법령 등에 근거 없이 승진 포기원을 징구하고 희망자만을 대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잘못 작성하여 승진할 수 없는 후보자가 승진하는 등 부당한 승진을 발생하게 한 AP, AO, AQ를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조치(경징계 이상)하며, **(징계)**

③ 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춘 적격자로부터 승진 포기원을 징구하는 등 승진후보자 명부를 잘못 작성하여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AR·AS, AT·AU, AV·AW에게는 경고 조치하시고, **(경고)**

④ 법령 해석 오인으로 일부 적격자를 누락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잘못 작성한 AX·AY, AZ·BA, BB·BC에게는 주의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관련자 명세 별첨】

[별표 1]

유치원 · 초등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명부 오작성 현황

※ 생략

[별표 2]

중등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명부 오작성 현황

※ 생략

[별표 3]

중등 특수 장학관 승진후보자명부 미작성 현황

※ 생략

[별표 4]

승진후보자명부 평정 방법 미준수 현황

※ 생략

[별표 5]

승진후보자 명부 관리(기재요령 준수) 현황

※ 생략

교 육 부

기관경고·주의·통보

제 목 **교장공모제 감점 처리 기준 미준수 등 운영 부적정**

소 관 기 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조 치 기 관 울산광역시교육청

내 용

1. 업무개요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울산교육청”이라 한다) △과, ▷과는 「울산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교육·상훈·복무·징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 2024학년도 6월까지 초등학교 2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3곳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였고, 교장공모제 운영 절차는 [표 1]과 같다.

[표 1] 교장공모제 운영 절차(「교육부 업무처리지침」)

1	교육부·교육청	교장공모제 시행 안내
2	학교	학교구성원 의견수렴→학교운영위원회심의→교장공모제 신청
3	교육부·교육청	교장공모제 시행 학교 지정
4	**교육청·학교**	**교장공모 공고**
5	학교	**공모교장 지원자 접수**
6	**교육청·학교**	**자기소개서 및 학교경영계획서 공지(익명)**
7	학교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
8	**학교**	**(1차 – 50%)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심사**(서류·면접 등) **및 추천**
9	교육청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
10	**교육청**	**(2차 – 50%)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심사**(서류·면접 등) **및 추천**
11	교육청	단수 임용추천
12	교육부	임용제청
13	대통령	공모교장 임명

*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를 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고등·특수학교는 교육청에서 구성·운영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위임받아 마련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5 제1항부터 제6항에 따르면 공모를 통하여 교장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지원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모교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학부모,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한 교원,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졸업생 또는 교육 관련 전문가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해야 하며, 공모교장심사위원회는 지원자의 경력, 학교 경영계획서, 상호 토론 및 면접 결과 등을 포함하여 지원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야 하고, 공모 교장의 직무 수행 등을 평가할 때는 구성원의 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임용제청권자는 공립 학교 공모 교장에 대한 평가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5 제7항에 따르면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공모 교장의 공모 절차, 임용,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마련된 「교육부 교장공모제 업무처리지침(2021～2024)」에 따르면 [표 2]와 같이 ㉮학교와 교육청은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및 학교경영계획서 등에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지원자에 대한 정보[26], 특정 인사 및 단체와의 연관성 등 기재 금지 사항을 익명화하여 학교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하고('유의사항'), ㉯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자기

26) 지원자에 대한 정보는 심사일 전일까지 심사위원에게 비공개

소개서, 학교경영계획서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위해 제출서류에 대한 심사기준을 명확히 수립하여 지원자가 지원서에 기재 금지된 특정 인사 및 단체와의 연관성 등을 기재하는 경우 감점 조치(만점의 10% 이상)[27] 등을 실시해야 하며, ㉑공정한 심사·선정 절차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여 학교·교육청 심사 시 진행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심사 종료 후 교육부가 점검을 요청한 항목별 점검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28]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표 2] 교육부 교장공모제 업무처리지침

<table>
<tr><th rowspan="2">학년도</th><th rowspan="2">㉮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및 학교경영계획서</th><th colspan="3">㉯지원서(경력 및 주요활동실적, 자기소개서, 학교경영계획서) 작성 기준 및 심사 기준</th><th rowspan="2">㉰관리 및 점검</th></tr>
<tr><th>경력 및 주요활동 실적</th><th>자기소개서</th><th>학교경영계획서</th><th>감점 기준</th></tr>
<tr><td rowspan="2">2021</td><td rowspan="2">성명 등 개인정보, 단체명 등을 익명화하여 학교·교육청 홈페이지 공지</td><td rowspan="2">-</td><td>·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특정 인사 및 단체와의 연관성 등은 기재 금지 → <u>기재 시 감점 조치</u></td><td>·타 계획서 맹목적 인용 → 최저점 부여 가능</td><td rowspan="2">3.1.자는 <u>감점 조치</u>
9.1.자는 <u>만점의 10% 이내 감점 조치</u></td><td rowspan="2">공정한 심사·선정 절차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학교·교육청 공모 진행 과정에 대한 관리 및 점검* 실시
* 학교, 교육지원청 점검표</td></tr>
<tr><td colspan="2">·표절심사위원회 구성 운영</td></tr>
<tr><td rowspan="2">2022
~
2024</td><td rowspan="2">성명 등 개인정보, 단체명 등을 익명화하여 학교·교육청 홈페이지 공지</td><td colspan="3">·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특정 인사 및 단체와의 연관성 등은 기재 금지 → 특정 인사 및 단체 가입 여부 또는 이와 관련된 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u>기재 시, 심사에서 감점 등 불이익 부여</u>
(기재 금지 사항 예시 : 특정 인사 실명, 교원단체 실명, 특정 교원단체 소속만 참여할 수 있는 활동단체명 등)</td><td rowspan="2"><u>만점의 10% 이상 감점 조치</u></td><td rowspan="2">공정한 심사·선정 절차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학교·교육청 공모 진행 과정에 대한 관리 및 점검, <u>교육부 보고*</u>
* 교육청 점검표가 추가되어, 교육부 보고</td></tr>
<tr><td></td><td colspan="2">·표절심사위원회 구성 운영</td></tr>
</table>

따라서 학교와 교육청은 교장공모제 운영 시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여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및 학교경영계획서를 익명화하여 학교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했어야 하고, 지원자의 지원서류에 특정 인사 및 단체와의 연관성 등이 기재된 경우 감점 조치하였어야 했으며, 교육청은 학교·교육청 공모 진행 과정에 대한 자체 관리

27) 2021학년도 3.1.자 지침에는 '자기소개서'에 기재 시 감점조치로만 안내, 2021학년도 9.1.자 지침에는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감점기준 강화(만점의 10% 이내)로 안내, 2022학년도 3.1.자 지침부터는 만점의 10% 이상으로 안내

28) 2021학년도 지침에는 학교용·교육지원청용 점검표만 제시되어 자체 점검토록 하였고, 2022학년도부터는 교육청용 점검표가 추가되어 교육부로 점검 결과 보고 요청

및 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면서 교육부가 점검을 요청한 항목에 대해서는 실제 점검 후 그 결과를 사실대로 교육부에 보고하는 등 교장공모제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했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지원서류 내 단체명 등이 익명화되지 않은 채 홈페이지에 공지

2021학년도부터 2024학년도 상반기까지 공모제를 운영한 8개 학교를 확인한 결과, 학교와 교육청에서 [표 3]과 같이 단체명 등은 익명화되지 않은 지원서류를 홈페이지에 공지하였다.

[표 3] 교장공모제 지원서류 익명화 및 홈페이지 공지 현황

※ 생략

나. 감점 미조치

2021학년도부터 2024학년도 상반기까지 공모제를 운영한 8개 학교를 확인한 결과, 학교와 교육청은 2021학년도에는 [표 4]와 같이 지원자의 '경력 및 주요활동' 등에 기재 금지 사항이 기재되었음에도 당시 교육부 지침상 감점 조치토록 한 '자기소개서'에 해당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감점 조치하지 않았고, 2022학년도부터는 [표 5]와 같이 심사계획에는 지원서에 기재 금지 사항 기재 시 만점의 10% 감점이라는 감점 기준을 마련했지만, 실제 감점 조치는 하지 않았다.

[표 4] 교장공모제 감점 조치 현황

※ 생략

[표 5] 교장공모제 감점 기준 마련 및 감점 조치 현황

※ 생략

다. 교육청 자체 관리 방안 미준수 및 교육부에 점검 결과 보고 미흡

2021학년도부터 2024학년도 상반기까지 교장공모제를 운영한 학교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울산교육청이 수립한 자체 관리 방안 준수 여부 및 교육부에 점검 결과 보고 현황을 확인한 결과, [표 6], [표 7]과 같이 일부 학교·교육청에서 심사위원을 무작위로 선정하지 않는다거나 심사의 전 과정을 녹취하지 않는 등 교육청이 자체 수립한 관리 방안을 준수하지 않았다.

[표 6] 교육청 자체 관리 방안 이행 현황 및 점검 현황

※ 생략

[표 7] 교육청 자체 관리 방안 이행 현황 및 교육부에 점검 결과 보고 현황

※ 생략

또한, 울산교육청은 2022학년도부터 교육부가 점검을 요청한 점검 항목(10개)[29] 모두 양호하다고 평가한 점검표를 교육부에 보고하면서 "⑧학교·교육(지원)청 평가 시 기재 금지 사항에 대해 감점 조치를 하였는가"라는 항목에도 "예(양호)"라고 하고, 미흡시 조치사항 등 특이사항은 없다고 보고하였다.

29) 점검항목 ①학교심사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②교육(지원)청의 심사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③심사위원 서약서 징구 여부, ④심사위원 사전교육 유무, ⑤출제 문항 보안 유지 및 관리 적정성, ⑥심사 시 교원단체 대상 참관 안내 여부, ⑦자기소개서 등 기재 금지 사항에 대한 명확한 감점 배점 또는 비율 안내 유무, ⑧학교·교육청 평가 시 기재 금지 사항에 대해 감점 이행 여부, ⑨이의제기 신청기간에 대한 공지 여부, ⑩이의제기 사안에 대한 조치 여부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등 의견

울산교육청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수용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 조치하여 향후 이루어질 교장공모제 운영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하였다. 다음은 구체적인 사항별로 울산교육청이 답변한 내용이다.

가. 지원서류 내 단체명 등이 익명화되지 않은 채 홈페이지에 공지

울산교육청은 학교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된 지원자의 지원서류 내 단체명 등이 익명화되지 않은 이유는 [표 8]과 같이 지원자가 심사위원용 인쇄본과 파일(익명 및 기명 버전)을 제출할 때 개인이 특정되는 정보를 익명화하지 않고 제출하였기 때문이고, 학교와 교육청 업무 담당자는 지원자가 익명 버전이라고 명시하여 제출한 버전의 파일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였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표 8] 교장공모제 공고문 내 “교장 공모 신청자 제출서류”(발췌)

※ 생략

나. 감점 미조치

울산교육청은 지원자의 지원서류에 특정 단체명 등 기재 금지 사항이 기재된 경우 만점의 10% 감점이라는 감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학교와 교육청에서 위촉하여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장이 주관하여 진행한 심사 과정 중에 실제 감점 조치는 없었기 때문이라며 학교와 교육청은 심사위원들이 판단한 심사 결과를 존중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일례로, ‘20xx.xx.xx.자 ○& 교장공모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업무를 담당한 ○& BD와 ○◭ BE는 교육부가 지원자에게 기재를 금지하고 기재 시 감점 조치하라는 것은 “특정 교원단체”만 해당된다고 이해했고, ○◭ BF는 울산교육청(△과)로부터 그렇게 답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며, 이에 연구회나 동아리 등 단체명은 감점 조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감점 조치해야 하는 특정 교원 관련 단체인지 여부도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 BD는 만점의 10% 감점은 서류 단계에만 한정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한 반면, ○◭ 업무 담당자들은 서류 및 면접 등을 포함한 전체 전형에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 다른 사례로, ‘20xx.xx.xx.자 ○★ 교장공모제’ 학교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업무를 담당했던 ○★ BT은 지원자 1명이 특정 단체와 관계되어 활동한 내역을 다수 기재했음에도 학교심사위원회에서 감점 조치하지 않은 것 관련하여 심사 당시 심사위원의 권한이라고 생각해 감점 조치 내역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학교는 학교심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심사위원의 고유 권한을 침범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였고, 울산교육청에서 ○★ 교장공모제 업무를 담당했던 AV는 업무 담당자의 역할은 심사 과정을 점검하면서 심사위원에게 감점 조치 기준 등을 안내하는 것이지 심사위원이 부여한 심사 점수를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면서, 교육부 차원에서 기재 금지된 특정 단체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줄 때 교육청에서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고, 이를 심사위원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이사항으로는 ‘20xx.xx.xx.자 ○& 교장공모제’ 교육청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 ○◭ 담당자들은 기재 금지 사항 기재 시 만점의 10% 감점 조치가 전체 전형에 해당된다고 답한 반면, ‘20xx.xx.xx.자 ○★ 교장공모제’ 교육청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 담당자들은 만점의 10% 감점 조치는 서류 전형에만 해당한다고 답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울산교육청은 교장공모제 심사 시 감점 조치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이 아닌 학교나 교육청 담당부서(담당자)가 기재 금지 사항을 확인하고 감점 조치해야 한다면, 교육부 지침에 담당부서(담당자)의 역할을 명시함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과 함께 현 교육부 지침에서도 만점의 10% 이상 감점 조치해야 한다는 기준이 서류 전형에만 해당하는지 면접 전형 등에도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구체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교육청 자체 관리 방안 미준수 및 교육부에 점검 결과 보고 미흡

울산교육청은 교장공모제 자체 관리 방안 중 '심사위원을 무작위로 선정해야 한다'는 기준이 준수되지 않은 이유로는 심사위원회를 운영한 학교 및 교육(지원)청 관리자 등이 "무작위"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하였고, 일부 기관에서 '심사 전체 과정을 녹취해야 한다'는 자체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면접 전형만 녹취한 이유로는 녹취의 특성상 음성을 녹음하는 과정이라 판단하여 서류 전형 과정은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진행 과정상 실수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교육부가 교장공모제 진행 과정을 항목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표기하여 제출토록 한 보고 내용 중 '기재 금지 사항에 대한 점검 및 감점 조치 항목'에 "양호"라고 기재하여 보고한 이유는 심사위원에게 기재 금지 사항과 감점 기준 등을 안내 후 시행된 심사였기도 하고 심사위원들이 감점 조치하지 않은 것은 심사 결과 감점 요인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며, 이를 반영하여 해당 점검 항목에 대한 답변을 "양호"라고 기재하여 교육부로 보고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업무 담당자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20xx.xx.xx.자 ○& 교장공모제' 교육청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업무를 담당했던 ○▲ BE는 학교에서 교장공모제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에서 점검하는 절차가 있고, 그 점검 결과는 울산교육청을 거쳐 교육부로 보고된다고 알고 있었으나, 해당 업무를 상급자가 해서 그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였고,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으로 점검표를 보고하는 문서를 결재한 ○◭ BG는 “기재 금지 사항 확인 및 조치 유무 점검 사항”에 “예”라고 한 것은 관례적으로 점검해서라고 생각했다고 답하였다. 또한, ‘20xx.xx.xx.자 ○★ 교장공모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AU와 AR은 학교와 교육청 점검표를 교육부에 보고하는 결재문서가 상신되었을 때 담당자가 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고 했기에 이를 믿고 결재했다고 진술하였다.

종합하면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들은 공통적으로 담당자가 심사위원에게 감점 기준을 안내하였기에 감점 처리 권한은 심사위원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면서, 그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교장공모제 절차를 진행하려 노력해 온 점과 심사 관련 사항은 심사위원에게 일임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한 점을 처분 시 고려해달라고 호소하였다.

② 검토 결과

가. 지원서류 내 단체명 등이 익명화되지 않은 채 홈페이지에 공지 관련

학교와 교육청이 교장공모제를 운영하면서 지원자가 익명본이라고 제출한 지원서를 확인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공지할 경우, 지원자가 익명본이라고 제출한 지원서에도 기재 금지 사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지원자가 특정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 지원자에 대한 정보를 심사일 전일까지 심사위원에게 비공개하도록 하는 지침을 위배하여 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감점 미조치 관련

학교와 교육청이 교장공모제를 운영하면서 지원자의 지원 서류에 기재 금지 사항 기재 시 감점 기준을 적용하여 감점 조치해야 함에도 감점 조치하지 않고, 기재 금지 사항은 “특정 교원단체 실명”에만 한정된다고 주장하는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간 교장공모제 운영 관련 대책[30]으로 마련된 교육부의 기재 금지 사항 관련 지침이 학교와 교육청이 주장하는 “특정 교원단체 실명”에만 한정될 경우, “특정 교원단체 실명”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지원자가 특정되는 정보를 다수 기재한 자에게는 감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심사의 공정성 측면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교육부 지침(“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특정 인사 및 단체와의 연관성 등은 기재를 금지하며, 특정 인사 및 단체 가입 여부 또는 이와 관련된 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기재 시, 심사에서 불이익 부여”)에서도 학교와 교육청이 주장하는 “특정 교원단체 실명”으로만 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지원자가 특정되는 단체명 등을 기재한 경우에는 감점 조치해야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표 5]와 같이 ‘○⊙‘ 등 “특정 교원단체 실명”을 기재한 경우에도 감점 조치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학교와 교육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표 6]과 같이 울산교육청이 공고한 교장공모제 공고문에서도 “익명 심사위원용에 지원자의 이름과 소속은 반드시 ○○○으로 처리, 그 외 본인이 드러나는 특정년도 근무지나 학교 등도 ○○○으로 표기 바람”이라는 요청은 ’지원자가 드러나는‘ 정보는 익명처리하라는 요청으로 해석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교육청도 지원자가 특정되는 정보는 심사의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요인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유추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지원자가 제출한 익명본이 적정하게 익명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지원자가 특정된 정보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확산될 우려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다만, 학교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실제 교장공모제 업무를 담당한 업무 담당자간에도 교육부 지침상 기재 금지 사항 위반 시 만점의 10% 이상 감점

30) 2017, 2018 교육위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서 교육부에는 교장공모제 취지를 살리는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교육청에는 절차상 형평성, 투명성, 객관성 측면의 개선 필요 지적

조치가 심사 과정 중 서류 전형에만 해당하는지, 면접 전형 등 전체 과정에 해당하는지 혼동하고 있는 점, “특정 교원단체 실명” 및 “특정 인사 실명”만이 기재 금지 사항에 해당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업무 담당부서(담당자)가 감점 조치해도 되는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점 관련해서는 교육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 이는 처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다. 교육청 자체 관리 방안 미준수 및 교육부에 점검 결과 보고 미흡 관련

학교와 교육청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무작위로 선정하지 않거나 심사의 전 과정을 녹취하지 않는 등 울산교육청이 수립한 자체 관리방안을 준수하지 않은 점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 소홀에 대한 주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울산교육청이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자의 지원서에 특정 단체명이 기재되어도 감점 조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점검표에 “양호(특이사항 없음)”로 표시하여 교육부에 보고한 점은 교장공모제의 객관성,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교육감**은

① 관련 규정 등에 맞지 않게 교장공모제 운영 시 지원서류 내 단체명 등이 익명화되지 않은 채 홈페이지에 공지, 감점 미조치, 교육부에 점검 결과 보고 미흡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부서(△과, ▷과)에 경고 조치하고, **(기관경고)**

② 교육청 심사위원회 운영 시 심사위원을 무작위로 선정하지 않거나 심사의 전 과정을 녹취하지 않는 등 교육청 자체 관리 방안을 준수하지 않은 담당자(AW· AQ·AV, AT·AO·AU, AS·AP·AR)에게 주의 조치하며, **(주의)**

【관련자 명세 별첨】

③ 학교 심사위원회 운영 시 심사위원을 무작위로 선정하지 않거나 심사의 전 과정을 녹취하지 않는 등 교육청 자체 관리 방안을 준수하지 않은 담당자는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시기 바라며, **(통보)**

④ 향후 교장공모제 운영 시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교 육 부

징계·경고·주의·시정·통보

제 목 **○◩ 시설공사 계약 및 법정경비 정산 업무 부적정**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울산광역시교육청

내 용

1. 업무개요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울산교육청”이라 한다)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유아교육법」 제6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정보제공,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 교원 연수 등을 위하여 ○◩을 두고 있다.

○◩은 20xx.xx.xx.부터 20xx.xx.xx.까지 “ㄱㄱ”, “ㄱㄴ”, “ㄱㄷ”, “○◪ ㄱㄹ” 등 총 4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4건의 시설공사 중 전문공사업 계약 업무와 관련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받고, 법정경비 정산 업무와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받는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가. 전문공사업 시설공사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1건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이 1천 5백만 원 이상인 전문공사의 경우 해당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법정경비 정산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설치된 안전 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31]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보험료(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3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안전시설비 등,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기술지도비 등

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보험료[32] 사후정산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입찰공고 등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안에서 정산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은 1건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이 1천 5백만 원 이상이고 전문공사에 해당할 경우 해당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공사금액에 계상된 법정경비의 사용실적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사용하지 않은 법정경비는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전문공사업 미등록 업체와 시설공사 계약 체결

○◩은 [표 1]과 같이 20xx.xx.xx.부터 20xx.xx.xx.까지 “ㄱㄱ” 등 3건의 전문공사를 추진하면서 해당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3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표 1] 전문공사업 미등록 업체 공사계약 체결 현황

(단위: 천 원)

연번	공사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상대자			해당 전문공사업종	업무 담당자
					업체명	대표자명	보유 면허		
1	ㄱㄱ	-	-	-	○◈	BI	실내건축 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안) BP (계약, 지출) BH
2	ㄱㄴ	-	-	-	○◬	BJ	무면허	실내건축 공사업	(기안) BP (계약, 지출) BH
3	ㄱㄷ	-	-	-	○◎	BL	실내건축 공사업	기계설비 공사업	(기안) BP (계약, 지출) BK
합계			88,70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ㄱㄱ”는 물로 채워진 공간을 둘레길로 만들기 위해 실시한 공사로 조경을 위해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 공사다. 그리고 신축, 증축 등 건물을 새로 짓는 공사가 아닌 기존 시설물 일부를 보수하거나 개선하는 공사로, 공사 예정금액이 00,000천 원이므로 해당 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 면허를 가진 업체와 계약을 해야 하는 전문공사다.

그런데 ○◩ BH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가진 ○◈(대표: BI)와 20xx.xx.xx. “ㄱㄱ”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20xx.xx.xx.부터 20xx.xx.xx.까지 공사를 추진하였다.

또한, “ㄱㄴ”는 ○◭ 노후화에 따른 보수 및 개선을 위해 실시한 공사로,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 공사다. 그리고 신축, 증축 등 건물을 새로 짓는 공사가 아닌 기존 시설물 일부를 보수하거나 개선하는 공사로, 공사 예정금액이 00,000천 원이므로 해당 공사업(실내건축공사업) 등록 면허를 가진 업체와 계약을 해야 하는 전문공사다.

그런데 ○◩ BH는 전문공사업 면허가 없는 ○◬(대표: BJ)와 20xx.xx.xx. “ㄱㄴ”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20xx.xx.xx.부터 20xx.xx.xx.까지 공사를 추진하였다.

한편, “ㄱㄷ”는 모래를 활용하여 노는 놀이터에서 모래를 씻고 털어내기 위해 세면대 및 에어건을 설치한 공사로, 건축물 등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배관 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것이 필요한 공사다. 그리고 신축, 증축 등 건물을 새로 짓는 공사가 아닌 기존 시설물 일부를 보수하거나 개선하는 공사로, 공사 예정금액이 00,000천 원이므로 해당 공사업(기계설비공사업) 등록 면허를 가진 업체와 계약을 해야 하는 전문공사다.

그런데 ○◩ BK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가진 ○◎(대표: BL)과 20xx.xx.xx. “ㄱㄷ”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20xx.xx.xx.부터 20xx.xx.xx.까지 공사를 추진하였다.

나. 법정경비 정산 없이 공사대금 지급

○◩은 20xx.xx.xx. ○◐(대표: BM)와 “○◪ ㄱㄹ” 계약을 체결하고, 20xx.xx.xx. ~ 20xx.xx.xx. 공사를 추진하였다. 또한, 20xx.xx.xx. 준공검사를 실시[33]하고, 20xx.xx.xx. 대금을 지급[34]하였다.

이 과정에서 ○◩ BH는 20xx.xx.xx. 준공 서류 검토 시 ○◐가 제출한 법정경비 사용내역 중 ‘코로나19 방역비’와 관련하여 [별표 2]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견적서, 소독증명서, 사진 대지(14장) 외에 다른 세부 사용내역(세부 산출내역, 인력 투입 내역 및 방역기간, 이체내역서, 급여 지급 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이 확인되지 않고, 공사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일용, 상용)의 개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증빙

33) BU과 함께 준공검사를 실시하였고, BU은 당초 계획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BH는 계약내용 대로 시공되었는지를 감독함.

34) 선급금을 포함하여 총 4회(1회: 20xx.xx.xx. 000,000천 원, 2회: 20xx.xx.xx. 00,000천 원, 3회: 20xx.xx.xx. 00,000천 원, 4회 20xx.xx.xx. 000,000천 원)에 걸쳐 합계 000,000천 원을 지급함.

일부가 확인되지 않는데도 법정경비를 감액 조정하지 않고 준공 처리하여 20xx. xx.xx. [표 2]와 같이 법정경비 합계 00,000천 원(제경비 등 포함)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 2] ○◩ 시설공사 법정경비 정산 부적정 현황

(단위: 천 원)

기관명	공사명 (착공일~준공일) (계약일)	계약금액	구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미증빙 (회수액*)	계약자 (대표자)
○◩	ㄱㄹ	-	계상금액	-	-	-	-	-	○◐ (BM)
			준공금액 (a)	-	-	-	-		
			증빙금액 (b)	-	-	-	-		
			미증빙 (a-b)	-	-	-	-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가. 전문공사업 미등록 업체와 시설공사 계약 체결

① 관계기관 의견

○◩에서는 "ㄱㄱ"는 유아들이 좋아할 만한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경업체보다는 유아 체험시설 시공 경험이 있는 실내건축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종 판단 착오로 인해 발생한 사안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ㄱㄴ"는 놀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개조한 차량 내·외부를 수선하여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설계·제작하는 것이기에 '공사'로 계약하는 것보다는 '물품'으로 계약하는 것이 적절하였는데, 착오로 '공사'로 계약하였다고 답변하였다.[35]

35) ○△는 건설업 업종이 아닌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업종 등록을 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임.

아울러, “ㄱㄷ”는 세면대, 신발털이, 컴프레셔 보관소 등 시설물 제작에 따른 재료비가 전체 공사비의 약 88%로 인테리어 공종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실내건축공사업면허 소지자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종 판단 착오로 인해 발생한 사안이라고 답변하였다.

② 관련자 의견

BH는 2024. 6. 24. 실시한 문답에서 1건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이 1천 5백만 원 이상인 전문공사는 해당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와 계약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ㄱㄱ”는 실내와 실외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고, 미관을 살리면서 유아들에게 맞는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경이나 토목공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견적서를 받아준 것은 사업부서였고, 최종적으로 BN가 결정하였으며, BN는 둘레길에 대한 관심이 높고 기존에 여러 유치원 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경험한 업체 중 둘레길 공사를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추천해 주었다고 하였다. 때문에 BH는 면허가 불일치한 사실을 알고도 해당 업체가 공사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였으며, 실제 둘레길이 잘 조성되었기 때문에 정상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BH는 같은 날(2024. 6. 24.) 실시한 문답에서 “ㄱㄴ”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도 할 수 있었으나 유아에 맞는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는 업체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실제 ‘공사’로 계약은 하였으나 당시 ‘물품’으로 계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문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와 계약하지 않았으며, 변경 또는 수정계약하지 않은 이유는 ○◭의 완성도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공사’ 계약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BK은 2024. 6. 19. 실시한 문답에서 1건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이 1천 5백만 원 이상인 전문공사는 해당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와 계약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ㄱㄷ”는 세면대를 짜거나 수납장을 짜는 등 인테리어 중심의 공사라고 판단하였고, 세면대, 신발털이, 콤프레샤 보관소 등 제작에 따른 재료비가 약 88%였기 때문에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에 의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검토결과

“ㄱㄱ”는 기존에 물로 채워져 있던 공간을 메운 후 그 자리에 둘레길을 조성하는 공사로, ‘실외’에서 추진된 공사임에도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와 계약 체결한 것은 모순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BH는 공사 현장이 실내와 실외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문답에서 “ㄱㄱ는 조경이나 토목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미관을 살리면서 유아들에게 맞는 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업체여야 했다.”, “실내건축공사업이 적합하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고, 조경이나 토목 면허를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업체가 공사를 수행하는 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여, 해당 공사를 ‘실외’에서 추진하는 것과 계약상대자인 ○◈가 소지한 면허가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종 판단 착오로 인해 발생한 사안이라고 답변한 기관의 의견과 실내와 실외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 BH의 의견은 수용하기 어렵고, 시공의 완성도가 계약 체결 당시 관련 법령 위반의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없다.

“ㄱㄴ”는 계약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가 모두 공사계약으로 명기되어 있고, 공사계약의 경우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서 계약서 작성 시 착공일자, 준공일자, 공사기간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어, 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담당자는 동 계약이 ‘물품’이 아닌 ‘공사’ 계약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

또한, 상기 공사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ㄱㄴ”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ㄱㅁ”, “ㄱㅂ”과 함께 시기적으로 통합[36]하여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계약을 추진하였다.[37]

따라서 BH는 1건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이 1천 5백만 원 이상인 전문공사는 해당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와 계약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계약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하면서 ‘공사’ 계약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공종 판단 착오로 인해 발생한 사안이라는 기관의 의견과 BH의 의견은 수용하기 어렵다.

한편, “ㄱㄷ”는 세면대, 신발털이, 컴프레셔 보관소 등 시설물 제작에 따른 재료비가 전체 공사비의 약 88%이기 때문에 공종 판단 착오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였으나, 내역서를 확인해 본 결과 전체 공사금액(일반관리비 및 이윤 포함)의 약 64%가 직접재료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세면대 설치, 위생설비 등을 위해서는 급배수·위생·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것이 필요한 공사였기 때문에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했음은 변함이 없다.

나. 법정경비 정산 없이 공사대금 지급

① 관계기관 의견

---

3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에서는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등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37) BN와 BH는 시설공사 분할 수의 계약(3회 분할, 합계 00,000천 원)으로 울산교육청에서 실시한 자체감사(2022. 3. 28. ~ 3. 30.)에서 ‘경고’ 처분(2022. 4. 19.)을 받은 바 있고, 시설공사 분할 수의 계약 내역에 “ㄱㄴ”도 포함되어 있었음.

○◩은 도급자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감액 조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공사기간 중 코로나19 방역소독 작업에 따른 경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고, 도급자인 ○◐이 직접 증빙할 수 없어 자회사인 ○◑이 제출하였으며, 실제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였으므로 감액 조정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ㄱㄹ" 공사를 시행하던 시기는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되던 시기였으므로 방역지침[38]에 따라 공사인력 및 관계자 출입이 잦은 공사장 전 범위에 방역소독을 매일 실시하였고, 작업기간을 고려할 때 도급자가 제출한 방역 견적 금액(00,000천 원)은 과다 책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관련자 의견

BH는 2024. 6. 20. 실시한 문답에서 "ㄱㄹ" 공사를 추진하던 시기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어 공사근로자 및 관계자 등으로 방문하는 사람이 많아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이 필요하였고, ○◐가 방역소독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방역기간 및 횟수를 감안하면 업체에서 제시한 금액이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하였다.

③ 검토결과

○◩이 "ㄱㄹ" 공사를 시행했던 시기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1항 제6호 관련 <별표 2>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도급자인 ○◐가 직접 증빙할 수 없어 자회사인 ○◑이 견적 금액을 산출하였다고 답변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도급자가 증빙서류로 제출한 견적서의 발행

3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제6판)」(2021. 3. 26.)

일자가 누락되어 있고, 자회사라고 주장한 ○◑은 공사 시행 전 이미 폐업(20xx.xx.xx.)한 것으로 확인[39]되어 ○◑이 견적 금액을 산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작업기간을 고려할 때 도급자가 제출한 방역 견적 금액이 과다 책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명의 인력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 증빙서류(세부 산출내역, 인력 투입 내역 및 방역기간, 이체내역서, 급여 지급 명세서, 세금계산서 등)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견적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근거가 미흡하다.

따라서 ○◐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증빙자료로 제출한 금액 중 코로나19 방역비는 인정하기 어렵고, 안전 장구(안전모, 안전화 등) 구입비(000천 원)와 코로나19 약품비(000천 원) 합계 0,000천 원(제경비 및 부가세 제외)만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징계요구 양정

BH는 ○◩에서 총무부의 계약 및 지출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전문공사업 계약 체결 부적정, 법정경비 정산 부적정 등 시설공사 관련 업무 및 지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법령을 위반하였다.

이러한 BH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른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40]에 해당되고, 「지방공무원

39) 국세청 홈택스(http://hometax.go.kr) 및 비즈노(https://bizno.net)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40)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1. 「지방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1” 징계기준 1. 성실 의무 위반 / “마. 부작위·직무태만” 및 “하. 기타”에 해당되며, 그 비위의 정도나 과실을 고려할 때 경징계 이상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교육감**은

①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전문공사업 미등록 업체와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법정경비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한 BH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경징계 이상)하고, **(징계)**

② 전문공사업 미등록 업체와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BO에게 경고 조치하며, **(경고)**

③ 전문공사업 미등록 업체와의 시설공사 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법정경비 정산 업무 지원을 소홀히 한 BP에게 주의 조치하고, **(주의)**

④ 시설공사 법정경비 정산 부적정 업체로부터 과다 지급한 공사비 합계 20,397천원을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⑤ 시설공사 법정경비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한 BN는 퇴직(20xx.xx.xx.)한 바 있어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통보(인사자료)]

【관련자 명세 별첨】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2021.8.3. 시행)

※ 생략

[별표 2]

ㄱㄹ 코로나19 방역비 증빙

※ 생략

교 육 부

주의·시정

제 목 **시설공사 법정경비 정산 부적정**

소 관 기 관 울산광역시교육청, ○◭, ○◭, ○◔

조 치 기 관 울산광역시교육청

내 용

1. 업무개요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울산교육청”이라 한다)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시설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등에 따라 시설공사 법정경비를 정산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1]

4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안전시설비 등,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기술지도비 등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보험료(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보험료[42] 사후정산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입찰공고 등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안에서 정산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울산교육청은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공사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보험료 등 법정경비의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법정경비는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했다.

---

4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울산교육청 등 4개 기관은 [별표] “시설공사 법정경비 정산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21. 12.부터 2024. 3.까지 “ㄱㅅ” 등 13건의 시설공사 준공 서류를 검토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법정경비를 감액 조정하지 않고 준공 처리하여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및 보험료 등 법정경비 합계 00,000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지급하였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울산교육청 등 4개 기관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수용하면서, 도급자가 제출한 각종 증빙자료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이 미비하여 법정경비 미정산 내역이 발생하였고, 향후 동일·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다만, ○◔은 “ㄱㅇ”와 관련하여 교육부 종합감사 후 도급자가 2025. 1. 증빙자료(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 제출하였고, 검토 결과 법정경비 사용내역 중 당초 0,000천 원에서 0,000천 원을 제외한 0,000천 원을 회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검토결과

○◔은 “ㄱㅇ” 준공(20xx.xx.xx.) 후 20xx.xx월분 법정경비 정산서류(급여대장, 보험료 납부액 등)가 일부 미비되었음에도 20xx.xx.xx.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이로 인해 도급자 측에서 추가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답변서를 통해 추가 제출(2025. 1. 10.)된 증빙자료를 확인한 결과, 공사대금 지급결의서, 상용근로자 명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업장 보험료 납부확인서, 20xx.xx월 급여대장 및 이체 내역, 20xx.xx월분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 제출되어 20xx.xx월분 국민건강보험료(20xx.xx.xx. ~ xx.xx., 18일분) 등 법정경비 0,000천 원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당초 0,000천 원에서 0,000천 원을 제외한 0,000천 원[43]을 회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교육감**은

① 시설공사 법정경비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한 울산광역시교육청 BQ 등 4명에게 주의 조치하고, **(주의)**

【관련자 명세 별첨】

② “ㄱㅅ” 등 시설공사 법정경비 정산 부적정 업체 13곳으로부터 과다 지급한 공사비 합계 29,591천 원을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43) ○◔에서는 공사기간을 20xx.xx.xx. ~ xx.xx.로 계산하여 0,000천 원을 회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실제 공사기간은 20xx.xx.xx. ~ xx.xx.이므로 0,000천 원을 회수하는 것이 타당하고, 교육부 계산액과 000천 원 차액 발생

[별표]

시설공사 법정경비 정산 부적정 현황

(단위: 천 원)

※ 생략

교 육 부

시정·통보

제 목 **기술사용료 집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울산광역시교육청

내 용

1. 업무개요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울산교육청”이라 한다)은 사립 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 내진보강, 수용시설 등 학교자체 해결이 곤란한 현안사업에 대해 해당 학교장에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울산교육청 관내 ○□에서는 특허공법이 적용된 ‘본관동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교육부령)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는 공사 등의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하고,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3절 제2호에 따르면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발주부서가 설계완료 전에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술보유자가 특허·신기술 부분의 공사에 하도급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술보유자는 별도의 기술사용료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44]

따라서 울산교육청 관내 ○■는 "ㄱㅈ"를 진행하면서 신기술·특허보유자가 하도급을 받아 직접 시공에 참여한 경우 당초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 간 협의로 설계금액에 반영된 기술사용료 금액만큼을 설계변경으로 감액하고 공사 관련 예산을 집행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울산교육청 관내 ○■는 ○◙(대표 BR)과 계약을 체결하고(20xx.xx.xx.) "ㄱㅈ"를 진행하면서 [별표] "시설공사 기술사용료 집행 부적정 현황"과 같이 신기술·특허 보유자 ○■(대표 BS)[45]이 하도급을 받아 직접 공사에 참여하였음에도 설계금액에 반영된 기술사용료(0,000,000원) 금액만큼을 설계변경으로 감액하지 않고 공사비를 집행하여 기술사용료 0,000,00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

44) 발주기관(○■)과 업체[○◙] 간에 체결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제3조 및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신기술·특허 보유자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 간에 협의한 요율(%)을 공사 원가계산 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하고, 신기술·특허 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에는 하도급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며 당초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 간 협의로 설계금액에 반영된 금액만큼을 설계변경으로 감액한다고 되어 있다.

45) ○◙과 ○■는 공사 원가계산에 기술사용료(8.5%)를 반영하는 사용협약을 체결

관계기관 의견

울산교육청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수용하면서, 사립학교는 시설 지원금을 학교로 직접 교부받아 공사 비전문가인 행정실 일반직원이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기술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교육감**은

① “ㄱㅈ”를 시행한 ○◙(대표 BR)에 과다 지급한 기술사용료 합계 0,000,000원을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시정)**

②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립학교 시설 지원금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표]

시설공사 기술사용료 집행 부적정 현황

(단위: 원)

연번	공사명	계약일 (공사기간)	계약금액 (최종금액)	계약상대자	부적정 집행 내역			담당자 (검사자)
					신기술 사용료 계약금액	부적정 내용	회수금액	
1	ㄱㅈ	-	-	○ (BR)	-	-	-	-